

비교법제 연구 09-15-□□-5

**주요 국가의 에너지 개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카자흐스탄 -

박 찬 호

**주요 국가의 에너지 개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카자흐스탄 -**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Energy Development in Major Countries
: The Republic of Kazakhstan**

**연구자 : 박찬호(부연구위원)
Park, Chan-Ho**

2009. 11. 30.

국문 요약

카자흐스탄은 석탄, 원유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으로서 에너지뿐만 아니라 광물자원 투자처로서의 세계적인 관심대상이다. 카자흐스탄 정부 역시 경제발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에너지자원산업을 장려하여 이 산업의 생산물 수출을 통해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이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하여 왔다.

지하자원개발법(RK Law on the Subsurface and Use of Subsurface)과 석유법(RK Law on Petroleum)은 카자흐스탄의 에너지자원개발을 담당하는 주요 법률로,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카자흐스탄 정부와 투자자와의 계약관계를 규율하여 자원개발법제도를 정착시켜갔다. 또한 에너지개발 관련 법규 및 정책들도 에너지 및 광물자원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자를 적극유치하기 위한 투자환경을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투자법상의 투자특혜, 세법상 각종 세율인하, 주식회사법상 소수주주보호규정 등은 그 노력의 일환으로 단행된 조치들이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의 현행 법규의 세부사항은 불투명하고, 잦은 개정으로 투자자의 지위가 불안한 상황이며,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임의해석 또는 관행이 앞서는 경우가 많아 에너지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한 프로젝트 입찰이나 체결한 계약의 이행 등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에너지개발사업에 국내기업이 진출시에 카자흐스탄 정부의 정책 및 법제도 현황을 고려하여 투자안전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카자흐스탄의 투자환경은 아직 과도기에 있으며, 향후 국제 기준에 맞는 법규정과 글로벌 수요에 의한 산업개방이라는 경제논리에 의해 점차 개선될 것이다. 또한 최근 카자흐스탄은 WTO 가입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진입하고 있어 투자와 관련된 법규정비 및 외국인 투자 규제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 키워드 : 카자흐스탄, 에너지법제·규제, 에너지 자원, 석유, 광물, 석탄, 투자

Abstract

The Republic of Kazakhstan is a country blessed with rich natural resources such as coal, petroleum, and other diverse and abundant subsurface resources, which attracts global attention as an investment target for energy and other mineral resources. The Kazakhstani government has been engaged in active promotion of the energy resources industry which has been put at the center of the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In order to establish a base for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he export of product from the aforementioned industry sector, efforts have been to press forward with this sector and it has been actively encouraging foreign investment in this sector.

The RK Law on the Subsurface and Use of Subsurface, and the RK Law on Petroleum have been the two prongs taking care of energy resource development of Kazakhstan. While the above laws underwent several revisions, they continued to regulate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Kazakhstani government and investors so that the system of resources development takes roots firmly. Furthermore, the Kazakhstani government pours into huge efforts by means of developing pertinent laws and policies to attract investors actively for the growth of the energy and mineral resource industry. Some of the measures implemented as part of such effort are investment special favors under the investment law, diverse kinds of reductions in tax rates, protection provisions for minority shareholders under the corporation law, etc.

Nonetheless, the details of Kazakhstani current laws are still ambiguous, and the status of investors is insecure due to frequent revisions of laws. In case of dispute, arbitrary interpretation or customary practice tends to

take precedence, which triggers unfairness in bidding for the project related to energy resource development business or performance of the contractual terms, etc. Thus, if Korean companies plan to enter the Kazakhstan energy development business, they should evaluate investment risks by considering policies and legal system of the Kazakhstani government.

The investment environment of Kazakhstan is still in the transition phase. In the future, it will improve gradually in tandem with economic logic as the legal provisions come to satisfy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e industry becomes more open as global demand escalates. Furthermore, Kazakhstan almost completed the steps for joining the WTO, and hence, it is anticipated that rearrangement in the investment-related laws and improvement in regulation of foreign investments will continue to move forward.

※ Key Words : Kazakhstan, Energy-related legal system · regulation,
Energy Resources, Oil, Coal, Mineral, Investment

목 차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 1 장 서 론	1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1
제 2 절 연구의 범위	14
제 2 장 카자흐스탄의 국가현황 및 에너지산업 환경	15
제 1 절 개 요	15
제 2 절 정치체제	16
제 3 절 카자흐스탄의 투자환경	17
제 4 절 우리나라와의 외교관계	19
제 3 장 카자흐스탄의 에너지개발법제의 규제체계 및 내용 ..	21
제 1 절 개 요	21
제 2 절 에너지개발법제의 발전과정	21
I. 1 단계 : 1990년부터 1996년까지	22
II. 2 단계 : 1996년부터 1999년까지	23
III. 3 단계 : 1999년부터 2004년	25
IV. 4단계 : 2004년부터 현재까지	27
제 3 절 지하자원개발법	29

I. 개 념	29
II. 지하자원개발권의 부여	29
III. 지하자원개발권의 양도	35
IV. 정부의 우선취득권	37
V. 정부의 일방적인 계약내용의 변경 · 추가권	39
VI. 지하자원개발계약의 종결	42
VII. 자원개발자의 계약파기 또는 이행거부권	43
제 4 절 석유법	44
I. 개 념	44
II. 석유와 가스 부문에서 투자관계의 특징	44
III. 석유법의 주요내용	48
제 5 절 소 결	52
제 4 장 카자흐스탄의 에너지개발 관련 법제 및 정책	55
제 1 절 개 요	55
제 2 절 투자법	55
I. 개 념	55
II. 투자법의 구체적 내용	58
제 3 절 세 법	78
I. 개 념	78
II. 발전과정	78
III. 주요 세율	79
IV. 주요 내용	81
제 4 절 그 밖의 투자관련정책	86

I. 수출입거래가격에 대한 통제	86
II.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규제	89
III. 외환정책	90
IV. 외국인 토지소유에 대한 규제	91
V.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제	92
VI. 자본시장정책	94
제 5 절 소 결	99
제 5 장 결 론	101
참 고 문 헌	10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석유, 석탄 가격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강구하는 한편 이 분야에 대한 규제 및 산업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은 자원의 안정적 공급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쟁점을 부각시키면서, 자원공급처를 다변화하고 해외자원 개발수입을 적극 도모하는 한편 해당 국가에 대한 에너지법제 및 자원규제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자원의 해외자원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나 자원이 풍부하면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운영하는 국가들의 에너지관련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에너지 산업의 경우는 지역별로 국가 상호간에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산업으로 발전하는 형태를 갖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자국의 에너지 산업 발전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와의 협정 또는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야 하고, 이러한 국가간 시스템 구축은 자국의 에너지 산업 발전에 시너지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주요 국가의 에너지법제를 둘러싼 제반의 사정을 살펴 본다면, 우리나라와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법제의 비교법적 연구 또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요 국가의 에너지정책의 특징은 다음의 표와 같이 구별됨. 이러한 정책의 특징은 에너지법제의 체계와 내용에 따라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음.

	미 국 형	유 럽 형
대상국가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정책접근	현 에너지 문제점 해결 (Positive Approach)	미래 목표 설정, 경로 역추적 (Normative Approach)
정책중점	에너지 공급 증대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주체	정부 적극 주도	민간 정부 함께 참여

위의 도표내용을 살펴보면, 유럽에서의 에너지정책과 미국 및 기타 국가의 에너지정책은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차이점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정보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시행될 수 있는 기본적인 에너지 정책 전반을 시사하며, 둘째 정부의 규제와 민간의 참여를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규제의 최적화된 균형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셋째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이슈화되는 에너지정책 시행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및 법제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배경으로 하여 에너지법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안 등이 중요한 이슈로 평가될 수 있다.

- (1)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체계
- (2) 에너지 공급설비 관련 관리 및 감독 체계
- (3) 에너지산업의 투자진출에 대한 법제 환경

따라서 본 연구는 상기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위에서 언급한 항목 등에 대한 에너지 법제의 현황 및 국내법적 시사점에 관한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유럽의 에너지법제 정책과는 다른 경향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의 의미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카스피해 연안국가로서 2000년대 이후로 중동국가의 석유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 중의 하나로서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에너지산업 협력 대상국가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국가이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주위 국가와 협력하여 활발한 에너지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즉, 천연가스 생산 증가를 위해 필요한 운송 및 판매 루트 확보와 관련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2001년 11월 천연가스의 탐사·생산·운송 분야 등 광범위한 부문에 걸쳐 10년간의 장기협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현재까지 카자흐스탄 국내의 가스 생산 지역을 기점으로 하는 신규 천연가스 수출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보다는 카자흐스탄은 자국산 천연가스의 장래 수출량증가를 피하기 위해 카라차가나크 등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러시아 경유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출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변국가로서 국가경제력의 경쟁상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경우, 송유관 시설을 통하여 카자흐스탄의 석유자원에 대한 자원교류를 수행한 것과 같이 여러 국가들에게 있어서 자원외교의 주요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도 자국의 에너지개발을 위하여 자체적인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산업혁신전략을 바탕으로 2015년까지 원유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IT, BT 등 신기술 분야를 포함한 차세대 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장기국가전략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 2008년도 WTO가입을 목표로 금융서비스, 관세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등 시장경제 확립 및 경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가 노선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2030년 세계 50대 경제대국 진입을 목표로 강력한 국가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 현대화와 경제구조 다변화 등의 달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전략 추진과정에서 수도개발 등에 과도한 재원이 투입되면서 균형 있는 인

프라 개발 등 재원배분의 효율성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국내 해외자원개발투자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 및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으로 현재 국제적인 외국의 거대기업들에 의하여 이미 투자진입이 선점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아직 카스피해 지역의 석유탐사가 완성되지 않은 점을 고려함으로써 차후의 국내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투자대상국가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지속적으로 투자확대를 도모하려고 하는 국가라는 점에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연구의 범위 및 내용을 구성한다.

(1) 카자흐스탄의 에너지개발법제의 규제체계 및 내용

-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공급설비 감독 체계
- 에너지 공급에 관한 설비 및 시설 운영
- 국제시장에서의 산업교류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의 구체적 내용과 설비감독에 관한 규제내용

(2) 카자흐스탄의 에너지개발 관련법제의 내용

- 에너지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법제의 구체적 내용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환경과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Safeguard) : 에너지산업에 대한 안보와 투자유치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법제 환경
- 대상국가별 에너지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사례

제 2 장 카자흐스탄의 국가현황 및 에너지산업 환경

제 1 절 개 요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영토가 가장 큰 나라로 공식 명칭은 카자흐스탄 공화국이다. 러시아, 카스피해,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세계에서 아홉째로 큰 나라이자, 가장 큰 내륙국이다. 또한 석유, 석탄 등의 에너지자원 이외에도, 철, 구리, 납, 아연, 금, 니켈, 크롬, 망간, 보크사이트, 인회토(燐灰土) 등의 매장량이 풍부하다.

카자흐스탄은 1991년 구 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시장경제체제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관심과 투자금액이 증가되었고,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국제유가상승에 힘입어 막대한 양으로 매장된 석유를 생산 및 수출하여 카자흐스탄은 연간 9%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또한 외국 투자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2008년 7월까지 그 규모는 총 761억 달러 가량(특히 석유와 가스부문)에 이르렀다.¹⁾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2004년 한·카자흐스탄 자원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석유공사와 LG상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카스피해의 유전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카자흐스탄의 자원개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이명박 대통령 카자흐스탄 수행 경제사절단이 지난 5월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이러닝(e-learning) 구축, 오일탱커 건조, 조선소·철도 건설과 일반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카자흐스탄의 행정수도 아스타나에서 이 대통령과 마시모프 카자흐스탄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

1) <http://www.state.gov/e/eeb/rls/othr/ics/2009/117413.htm>.

린 ‘한-카자흐스탄 신성장 비즈니스포럼’에서 양국간 자원개발협력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을 계기로 카자흐스탄 정부가 발주하는 각종 공공 인프라 개발사업에 우리기업이 진출하기가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에너지부문에 대한 이와 같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의 지속적인 對카자흐스탄 투자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 정부는 투자자의 계약적 권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국의 기업에게 유리한 법률을 제정, 또는 외국기업의 활동에 간섭함으로써 외국인들에게 불리한 투자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자의적이고 일관성 없으며, 모호기까지 한 투자관련 법조항들을 통해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해가고 있는데, 이로써 카자흐스탄이 외국인 투자에 완전히 열려져 있지는 못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제 2 절 정치체제

카자흐스탄은 2005년 12월 3선으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온건한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집권세력의 다소 권위주의적 통치행태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안정속의 점진적 민주화’ 방향으로 정치형태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미국, EU 등 서방국과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 국가 민주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체제에 대한 검토, 의회권한 강화, 지방자치 확대, 정당 기능 활동성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여 주변 접경국과의 국경 안정을 중시하는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 중심국으로서의 위상이 부각되고 있으며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 CICA), 세계 종교자 회의 및 미

디어 포럼을 개최하고, 2010년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의장국 수입에 따라 각종 제도와 법을 OSCE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전략적 위치, 러시아의 신뢰, 주변국들의 경제 진출 대상지로의 인식 등을 바탕으로 카자흐스탄의 외교적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제 3 절 카자흐스탄의 투자환경

카자흐스탄은 1991년 독립 초기부터 시장을 활짝 열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오늘까지 이어져 2008년 중반까지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규모는 761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는 중앙아시아 5개국 대상으로 이루어진 외국인투자 총액의 80%를 웃도는 규모이며, 국민 1인당 FDI 규모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10배 수준에 달한다. 카자흐스탄에 대한 국가별 외국인 투자현황은 미국(30%), 네덜란드(11.7%), 영국(11%)의 3개국이 카자흐스탄 외국인 투자의 절반이상 차지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지난 10년간 중앙아시아 전체 투자액의 약 80%를 카자흐스탄에 집중했을 정도로 카자흐스탄은 투자지로서 매력적인 국가이다.

구체적인 투자규모 및 분야별 투자현황에 대해서는 아래 <표 1>과 같다.

2) 이동길, 카자흐스탄의 광물자원 부존 현황 및 개발여건,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지 Vol.46, No.5 (2009)

<표 1> 對카자흐스탄 투자현황

(1) 국가별 연간 총 외국인 투자현황(단위: 백만 달러)

국가별	1993-2006	2007	2008 상반기	총 계
미 국	13,550.1	2,454.9	819.6	16,824.1
네덜란드	7,826.1	3,148.7	1,628.1	12,602.9
영 국	5,240.6	733.0	499.8	6,473.4
이탈리아	2,844.6	517.2	267.1	3,628.9
프랑스	2,352.3	1,022.6	507.5	3,882.4
스위스	2,256.1	633.2	115.2	3,004.5
한 국	2,129.7	232.3	119.6	2,481.6
중 국	2,043.4	358.2	354.2	2,755.8
캐나다	1,919.7	314.1	70.0	2,303.8
러시아	1,713.8	772.0	375.3	2,861.1
일 본	1,347.7	405.3	201.3	1,954.3
터 키	1,005.4	337.1	85.0	1,427.5
기 타	7,179.6	6,586.3	2,119.8	15,886.2
총 계	51,409.1	17,514.9	7,162.5	76,086.5

출 처 : 카자흐스탄 중앙은행³⁾

(2) 외국인 투자의 GDP 비율

2006	2007	2008 상반기
13.1%	16.7%	12.4%

출 처 :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3) <http://www.state.gov/e/eeb/rls/othr/ics/2009/117413.htm>

(3) 분야별 연간 총 외국인 투자현황 (단위 : 백만 달러)

분야별	1993-2006	2007	2008 상반기	총 계
농업, 수산업, 임업	-53.0	24.93	4.5	32.6
채광업, 채석업	24,682.3	4,656.9	1,644.0	30,983.2
제조업	5,708.8	893.5	428.1	7,030.4
원유 및 천연가스	22,409.7	4,316.3	1,438.1	28,164.1
전기, 가스, 물	725.9	36.6	46.5	809
건설	783.9	483.2	226.4	1,493.5
유통, 자동차, 가전	1,862.1	1,238.3	437.7	3,538.1
호텔, 레스토랑	125.5	49.2	19.2	193.9
교통, 운송보관	690.6	301.3	48.5	1,040.4
금융	946.9	2,938.3	798.6	4,683.8
부동산, 임대업	14,774.3	6,963.8	3,375.6	25,113.7
교육, 의료활동	394.8	98.1	89.4	582.3
총 계	51,409.1	17,514.9	7,162.5	76,086.5

출 처 :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제 4 절 우리나라와의 외교관계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1992년 1월 28일 외교관계가 수립된 이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꾸준히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 특히, 카자흐스탄 독립직후 카자흐스탄의 경제적 어려움과 서방기업들의 무관심이 지속되던 시기에 우리나라의 삼성물산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하여 성공적인 투자사례를 이룸으로써 서방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이후 우리기업들의 투자가 급감하였으나, 2002년도 카자흐스탄의 외무장관 방한 및 지식경제부 장관의 상호방문을 계기로 활력을 되찾기 시작한 양국관계는 2003년 11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방한,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 2008년 5월에 한승수 국무총리의 방문, 2009년 5월 이명박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카스피해 원유 및 광물자원 공동개발 등의 실질협력관계를 확대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 3 장 카자흐스탄의 에너지개발법제의 규제체계 및 내용

제 1 절 개 요

1996년 1월 27일 제정된 지하자원개발법(RK Law on the Subsurface and Use of Subsurface)과 1995년 6월 28일 제정된 석유법(RK Law on Petroleum)은 카자흐스탄에서 에너지 및 광물자원개발을 담당하는 주요 법이다.

카자흐스탄이 세계적인 석유 및 가스 생산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카자흐스탄 정부는 애초에 투자유치를 통해 자국 자원개발산업육성 및 경제성장을 위해 제정한 자원개발 법제도를 최근 10년간 여러 차례 개정하여 카자흐스탄 정부와 투자자와의 계약관계에서 정부의 입지를 강화해왔다. 특히 2007년 10월과 2008년 12월에 있었던 지하자원법 개정에서는 카자흐스탄의 국가안보 명목으로 계약 변경 또는 취소를 가능하게 하였고, 자원개발권자의 개발권 양도 등에 있어서 국가가 우선 취득할 수 있는 선매권(preemptive right)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요소들이 추가되었다.

이하에서 카자흐스탄의 에너지개발법제의 발전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에너지개발법의 대표적 법률인 지하자원개발법과 석유법에 대해 검토한다.

제 2 절 에너지개발법제의 발전과정

카자흐스탄이 주권국가의 지위를 획득했을 당시에는 구 소비에트 공화국의 하나였던 카자흐스탄은 지하자원개발을 규제할 만한 구체적인 법률을 두고 있지 않았다.⁴⁾

4) 당시 카자흐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Kazakh SSR)의 1964년 민법(Civil

이후 지하자원개발에 관한 카자흐스탄 법률은 소비에트 시대 이후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거쳐 변화되어 왔다. 이는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1단계는 1990년에서 1996년까지, 2단계는 1996년에서 1999년까지, 3단계는 1999년에서 2004년까지, 4단계는 2004년에서 현재까지이다.⁵⁾

I. 1 단계 :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카자흐스탄에서 지하자원개발의 시초는 이 분야의 최초 법률인 1992년 5월 30일의 자원 및 광물 가공법(Subsurface and Mineral Processing Code)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법을 통해 카자흐스탄 공화국이 지하자원개발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실제로, 이 법은 지하자원개발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많은 법원칙을 담고 있고, 이 가운데는 현재의 지하자원관련 법률에 상당수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많은 결함과 모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 내재된 이데올로기적 사고가 새로운 정치적 및 경제적 환경에 잘 어울리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로 드러났다. 외국투자자들은 이미 1991년에서 1992년 사이에 카자흐스탄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하였지만 이 법은 국가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국영기업과의 관계를 규제하는 것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지하자원개발에서의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를 규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카자흐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Kazakh SSR) 민법(Civil Code)과 1991년 5월 31일에 통과된 소비에트

Code)은 법적 구조, 제도, 용어, 개념적 측면에서 유럽국가, 일본 등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의 법률과 유사한 점이 많았다. 물론, 이러한 카자흐스탄 민법에 체화된 법적 제도들의 경제적 기반은 전적으로 소비에트 사회의 법체계를 토대로 하였다.

5) Olga Chentsova, Kazakh Legislation on Subsurface Use, I. Bantekas, J. Paterson and M. Suleimenov (eds); Oil and Gas Law in Kazakhstan: N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2003 Kluwer Law International. Printed in Great Britain, p. 123.

연방 및 여러 공화국들의 기본 민법(Basic Civil Legislation)⁶⁾이었다. 카자흐스탄 민법과 기본법들은 계약 당사자간의 의무, 계약, 책임, 손해배상, 불법행위 등에 관한 규율을 제도화하여, 카자흐스탄내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법률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시 카자흐스탄에서는 외국 투자자와의 대부분의 계약과 협의들은 외국법의 적용을 받았고, 그 계약 및 협의사항들 또한 주로 종전의 법률 시스템을 따랐던 미국이나 영국 등의 서구 법률 전문가들에 의해 작성되었다.

1992-4년에, 카자흐스탄의 지리 및 자원보존부 장관(Kazakh Ministry of Geology and Conservation of the Subsurface)이 지하자원개발 및 보존에 관한 운영 및 규제를 위한 대안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는데, 이로 인해 지하자원개발과 관련한 여러 활동들을 규제하는 강력한 법제정 시대가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 지하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할 수 있는 국가기관 목록이 작성 및 그 지위가 정립되었고,⁷⁾ 자원개발에 관한 면허와 계약·계약의 등록·협상 및 경쟁적 입찰에 대한 규제,⁸⁾ 지하자원에 대한 정보⁹⁾ 지하자원에 대한 감독¹⁰⁾ 등에 관한 정부의 규제가 이 시기 이루어졌다.

II. 2 단계 :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이 단계는 자원개발의 모든 핵심 분야에까지 카자흐스탄 법률이 확대된 시기이다. 이 단계의 시작은 지금까지 자원개발 분야에서 제정된 법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법률, 즉, 1995년 6월 28일의 석유법(Petroleum Law)과 1996년 1월 27일의 지하자원 및 지하자원개발

6) the Civil Code of the Kazakh SSR and the Basic Civil Legislation of the USSR and Republics

7) RK Presidential Decree No. 1637 dated 5 April 1994

8) RK Cabinet of Ministers Order No. 377 dated 13 April 1994

9) RK Cabinet of Ministers Order No. 1034 dated 8 December 1992

10) RK Cabinet of Ministers Order No. 811 dated 29 September 1992

법(Surface and Surface Use Law, 이하 ‘지하자원개발법’)이 공포되면서 부터이다.¹¹⁾ 이 법률의 제정으로, 지하자원개발법은 완전한 이론적 구조를 갖추게 되었고 자원개발자의 권리보장과 같은 진보적 조항들이 들어왔다.

지하자원개발법을 법적 시각에서 보면, 그 중심은 면허 및 계약시스템에 관한 규정과 자원개발권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법의 중요한 요소는 상업적 발견의 경우에 생산면허를 획득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발굴면허권자(exploration licence holder)에게 부여하는 조항¹²⁾; 자원개발자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개정 법률과 추가조항들은 그 개정 및 추가 이전에 부여되거나 체결된 면허 및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안전조항(stabilizing provisions)¹³⁾; 모든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들은 면허기관(licensing body)에서 당사자들이 서로 비밀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면허와 계약내용을 검색할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¹⁴⁾을 규정하였다.

1996, 1997, 1998년을 거치면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정부명령(Government Order)을 통해 점차 지하자원개발에 대한 규제를 더욱 확대해 갔다. 자원개발권의 획득 및 계약협상에 대한 조항,¹⁵⁾ 계약의 협상 및 관련 등록절차를 담당하는 관할 정부기관의 지위,¹⁶⁾ 표준 계약서(Model Contract),¹⁷⁾ 광물 및 자원 감독에 적용될 법제도¹⁸⁾ 등이 규정되었다.

11) 석유법의 대부분 기본적인 조항들이 지하자원법으로 계승되었기 때문에 석유법에 들어있는 지하자원개발에 관한 부분은 모든 종류의 광물과 관련한 지하자원 개발활동에 적용되게 되었다.

12) 제34조. 법 제정 이전에는 독점적 권리가 아니라 선택적 권리였다.

13) 제71조

14) 제6조

15) RK Government Order No. 107 dated 27 January 1997

16) RK Government Order No. 646 dated 27 May 1996

17) RK Government Order No. 107 dated 27 January 1997

18) RK Government Order No. 645 dated 27 May 1996; RK Government Order No. 106 dated 27 January 1997

그러나 이 시기 이루어진 지하자원권(subsurface rights)의 취득 및 생산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부명령은 그 구성이나 기술적 부분에서 지하자원개발법이나 석유법과 맞지 않았고, 심지어 특정 법률조항들의 효력을 저해하기까지 했다. 예를 들어, 석유사업시 강제적 보험에 대한 규제¹⁹⁾는 매우 비효율적으로 평가되어 투자자들의 비난을 받아, 시행 3개월 만에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카자흐스탄의 경제관련 법률들, 즉 회사법, 은행 및 외환 관련 법, 토지법, 외국투자법 등이 점차 선진화되어갔고, 유럽의 민법(특히 네덜란드 민법)의 영향을 받아 1994년 12월 27일 카자흐스탄 민법이 개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에너지 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을 포함한 상당수 경제관련 국제규약들에 서명하였다.

Ⅲ. 3 단계 : 1999년부터 2004년

이 단계는 석유와 광물에 대한 탐사 및 개발을 관할하는 석유법과 지하자원개발법을 1999년 8월 11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현대적 의미의 카자흐스탄 지하자원 관련법을 갖추게 된 시기이다.

1999년 개정이전의 지하자원개발법과 석유법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었고, 뒤 이은 하위 법규들(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정부명령들을 포함하여)도 법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실제로 지하자원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예컨대 환경보호나 근해자원(offshore resources) 개발 같은 것이 전부 또는 상당부분 아무런 규제 없이 방치되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또한 위 두 개의 기본법조차도 상호 조화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되고 조화되지 않은 부분을 정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이다. 또한 카자흐스탄이 법률제도의 간소화를 원하는 외국 투자자들의 바람을

19) RK Government Order No. 916 dated 18 July 1996

고려하고, 자원투자를 늘릴 수 있는 국가적 유인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개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98년 말, 이 ‘개정법률(Amendments Law)’에 대한 몇 가지 초안이 제출되어 여러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교적 빠른 속도로 개정논의가 진척되었고, 마침내 1999년 8월에 개정 법률이 공포되기에 이르렀다.²⁰⁾

이 시기 개정된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지하자원개발 면허제의 폐지
- 국영석유회사인 Kazakhoil社를 포함하여 ‘국영기업’에 대한 규제
- 지하자원권의 보증
- 권리의 부여(경쟁적 입찰에 대한 보다 엄격한 요건)
- 계약 유형들 {생산분배협약(Production Sharing Agreements: PSA), 표준 계약(Model Contract) 등}
- 국내 상품 및 용역을 위한 보다 엄격한 특혜적 규제
- 준거법으로서 카자흐스탄 법률의 확립
- 환경적 보호요건의 강화(특히 근해 탄화수소 개발과 관련하여)
- 상업적 발견, 작업 프로그램, 비용의 상황, 가스의 보존 및 소각, 공동생산활동, 그리고 지역권에 관한 신규 요건 및 제한들(기본적으로 탄화수소 프로젝트와 관련)
- 기타 개정안들

본 개정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은 오랫동안 유지해온 지하자원 개발권을 부여했던 면허/계약 시스템(licensing-and-contracts system)의 폐지이다. 국가와 자원개발자간의 기본 관계는 이때부터 면허의 사전

20) 당시 제출된 초안들은 그 구체적인 내용과 개념에서 각기 달랐다. 이 법안의 주된 제창자들이었던 카자흐스탄 공화국 투자청 관료들은 다른 카자흐스탄 국가기관, 여러 대규모 외국회사 및 투자그룹, 로펌 및 자문회사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작성하였다.

적 부여 없이 지하자원개발에 관한 당사자간의 계약만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1999년 개정법률 모두 긍정적인 시각으로 평가된 것은 아니나, 투자자 측면에서 보면 면허취득과 계약체결을 거쳐야 했던 이중 절차를 폐지하고 계약본위시스템(contract-based system)으로 변경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추가조항들 가운데는 과도하게 엄격하거나(예를 들어, 국내 하청업자들과 준거법에 대한 특혜) 또는 모호한 개념규정(예를 들어, 국영기업과 관할기관 등이 갖는 기능, 환경보호에 대한 규제)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IV. 4단계 : 2004년부터 현재까지

카자흐스탄 정부는 지하자원 이용 분야에 있어서 국가의 관여를 강화하기 위해 2004년, 2005년, 2007년, 2008년에 걸쳐 지하자원개발법을 개정하여왔다.

2004년 12월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① 양도된 지하자원개발권과 법인의 권익취득에 대한 국가의 선매권조항 추가; ② 정부와의 직접 교섭에 의한 지하자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권리조항 추가; ③ 지하자원 이용에 있어서 카자흐스탄인 고용, 국내물품 및 서비스와 고도처리 기술의 도입에 관한 의무규정 추가; ④ 입찰절차기간의 명문화(신청기간: 최저 1개월, 입찰예고: 최저 3개월, 심사: 2개월 이내); ⑤ 입찰시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추가(환경보호대책, 지역사회 개발계획, 기타 의무 등에 대하여)가 그것이다.

2005년 10월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① 정부는 지하자원개발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i) 양도를 받은 제3자의 계약 수행가능성의 불충분 ii) 에너지광물자원부로의 지출 정보에 관한 부정이 있을 경우 해당 양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지하자

원개발자의 자회사 양도와 기업상속(승계)이라도 국가의 허가를 요하였다.

특히 2007년 10월의 지하자원개발법 개정²¹⁾은 카자흐스탄의 국가안보 명목으로 계약 변경 또는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등, 카자흐스탄에서 지하자원개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을 상당히 불리하게 하였다. 2007년 10월 개정사유로, 하원 환경위원회는 카자흐스탄 국가안보법(Law on National Security)상에 “카자흐스탄 전략자원의 이용에 관한 계약 이행시, 카자흐스탄 국가 안보보호요건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하자원개발법”이 동 국가안보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가안보법에 부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통제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해 “지하자원개발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한 Nugmatulin 하원의원은 지하자원개발법이 개정될 경우, 카샤간 광구문제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지하자원개발법 개정 추진이 카샤간 광구를 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강조하였다.

한편, 2008년 12월에 지하자원개발법을 또 다시 개정하여 자원개발권자의 개발권 양도 등에 있어서 국가가 우선 취득할 수 있는 선매권(preemptive right)을 강화하고, 계약유형의 하나인 생산물분배협약(Product Sharing Agreement, PSA)을 폐지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조항들을 개정 또는 추가하였다.

이하에서는 현재 카자흐스탄의 지하자원개발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한다.

21) 카자흐스탄 Nugmatulin 하원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하원 환경위원회는 카자흐스탄 국익 수호를 위해 외국 기업과의 국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카자흐스탄 정부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하자원개발법(Law of Subsoil and Sunsoil Use)”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였고, 동 개정안이 2007년 9월 27일 상하 양원을 통과하고, Nursultan Nazarbayev 대통령이 10월 24일 지하자원개발법 개정안에 서명함으로써 동년 11월 3일에 발표되었다(<http://www.kazakhstanlive.com/1en.aspx>).

제 3 절 지하자원개발법

I. 개 념

지하자원개발법(Surface and Surface Use Law)은 카자흐스탄에 매장되어 있는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지질조사, 탐사 및 개발, 탐사 및 개발과 관련되지 않는 지하설비의 건설 및 운영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법이다. 지하자원개발권의 종류는 탐광권과 채굴권으로 나누어지며, 탐광권과 채굴권은 각각 6년까지(2년씩 2회 연장가능)와 25년까지(대규모 특별 광종에 따라서는 45년까지 연장가능) 보유가 가능하다. 이러한 지하자원개발권은 일정한 제한 하에 양도도 가능하다.

II. 지하자원개발권의 부여

지하자원은 카자흐스탄의 소유물로 탐광채굴 등의 실시에 관해서는 지하자원개발(이용)권을 취득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직접협상을 통하거나, 지하자원이용권 취득을 위한 투자입찰을 통해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부여받으며, 카스피해의 해상석유개발에서는 생산물분배협약(Production Sharing Agreement, PSA)을 통해 지하자원이용권이 부여될 수 있었다. 그러나 2008년 12월 카자흐스탄 의회를 통과한 지하자원개발법에 따라 종전에 카스피해 해상석유개발에 이용되는 계약유형인 생산물분배협약방식은 폐지되게 되었다. 또한 본 개정에서 계약체결 시한이 별도로 규정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탐사계약의 경우는 낙찰자가 발표된 날(입찰의 경우) 혹은 직접협상 합의서에 서명한 날(직접협상을 통해 지하자원이용권을 부여받은 경우)로부터 18개월 이내, 생산계약의 경우는 낙찰자가 발표된 날 혹은 직접협상 합의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24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직접협상(Direct Negotiations)

직접협상의 절차는 신청자가 관할기관에 신청자의 정보가 담긴 신청서를 제출하고, 직접협상이 결정되면 관할기관은 선정된 신청자에게 협상일자를 통고한다. 직접협상에 해당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탐사계약에 따른 지질조사로 광상을 발견한 경우, 배타적 채굴권을 갖는 해당자가 지하자원이용권을 신청할 경우
- 탐사 및/또는 개발과 관련 없는 지하설비의 건설 및/또는 운영에 관한 계약체결이 목적일 때
- 신청자가 국영기업일 때

2. 입찰(Bids)

지하자원이용권에 대한 입찰은 공개적 입찰 또는 잠재적 입찰자에게만 통고하여 이루어는 제한적 입찰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입찰자는 사전에 지하자원에 대한 탐사 및/또는 개발을 위한 기술, 조직, 관리 및 재정 능력이 명시된 정보와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할기관이 해당지역에 관한 지질학적 정보를 제공하면 입찰자는 이를 근거로 투자 프로그램 입찰가격을 준비하여 제시하게 된다.

종전의 낙찰자 선정은, “탐사/개발의 시작날짜, 개발 이익, 정부에 대한 사업초 및 사업후 지불액 추산, 투자액, 해당지역의 산업 및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프로젝트와 자금조달의 약정 및 조건, 환경보호 그리고 운영 안정성에 관한 법제 준수”를 기준으로 결정되었으나, 현재의 선정기준은 오직 “서명보너스”(Subscription bonus)²²⁾의 액수와 사회개발프로젝트를 위한 예산의 공제 액수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22) 정부와 자원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실시권을 취득했을 때 지불해야 하는 세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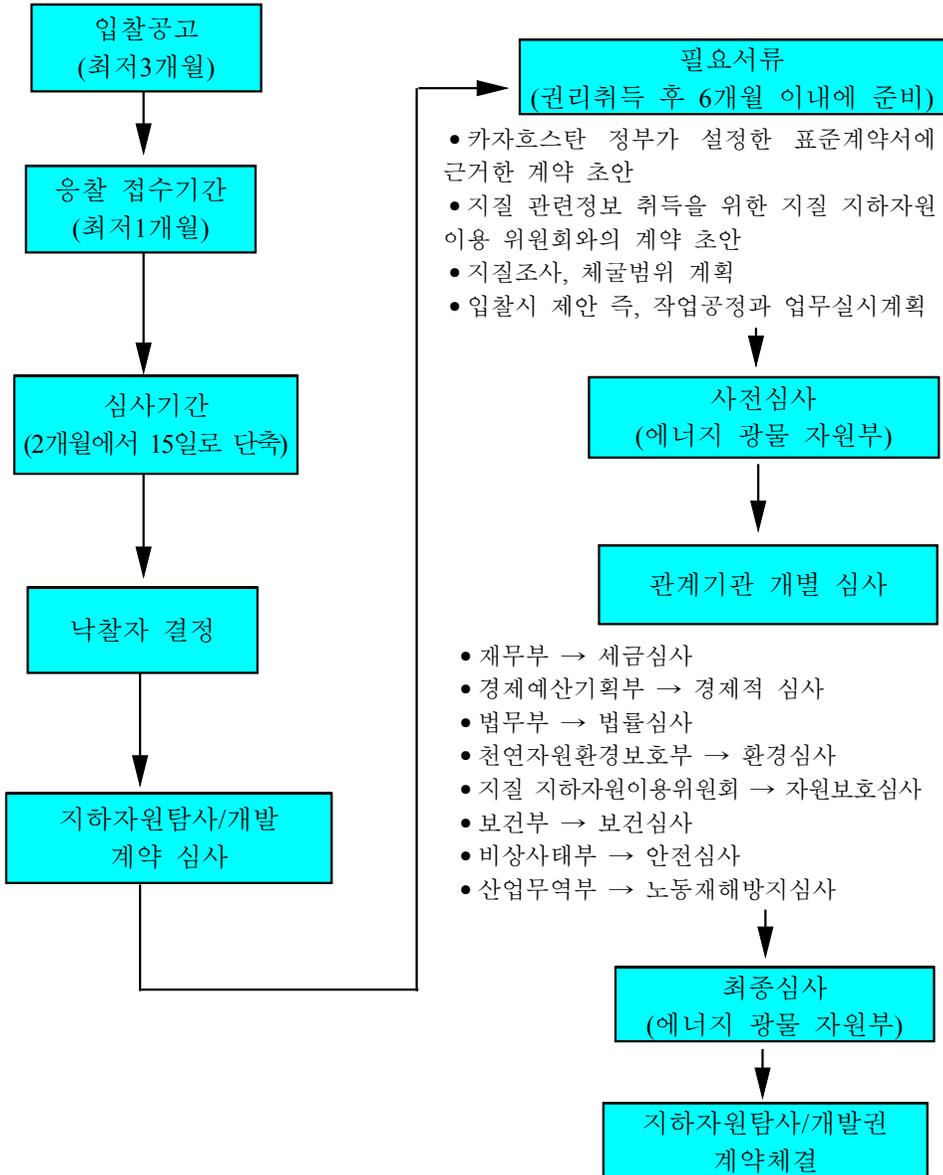
신청기간은 최저 1개월, 입찰 예고는 최저 3개월, 심사기간은 15일 (종전에는 2개월이었으나 15일로 단축)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입찰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재입찰에 오직 한 명의 입찰자만 있다면, 관할기관은 직접협상을 통해 해당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되었다.

입찰 위원회가 낙찰자를 결정하면, 낙찰자는 탐사/개발/건설/지하설비의 운영에 대한 지하자원이용권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계약에서 관할 기관에 의한 경제성 검토 및 세무조사 그리고 환경보호 및 보전에 관한 계약조건은 관할기관과 낙찰자 사이에 협상을 통해 작성된다. 매년 카자흐스탄 정부는 입찰을 위한 블록/매장지 리스트를 발표하고, 블록/매장지 개발 프로젝트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관련 국영 기업에 이를 제공한다.

입찰을 통한 카자흐스탄의 지하자원이용권 부여 및 계약체결 절차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카자흐스탄의 지하자원 개발권 계약체결 흐름도²³⁾



2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6, 해외자원 협력 및 기술정보 구축 연구보고서를 참조하여, 2008년 12월 카자흐스탄 의회에서 승인된 지하자원개발법 개정안을 추가하였다.

3. 생산물분배협약(Product Sharing Agreement, PSA)

카스피해와 아랄해의 카자흐스탄 영해에서 석유개발에 대한 권리부여는 해상 석유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물분배협약(PSA)이 적용된다. 그러나 2008년 12월에 통과된 개정 지하자원개발법에는 지하자원개발의 계약유형의 하나인 이러한 생산물분배협약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법이 발효된 때부터는 생산물분배협약은 지하자원개발을 위한 계약유형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PSA에 기술된 지하자원사용권 부여에 관한 절차를 보면, 해양 석유매장지에 대한 지하자원이용권은 일반적으로 공개 또는 제한적 입찰을 통해 부여되도록 하여 앞서 기술한 일반적 절차와 유사하나, 특별한 해안 석유매장지에 대해서는 국제 협정에 준하는 적절한 입찰 없이 부여될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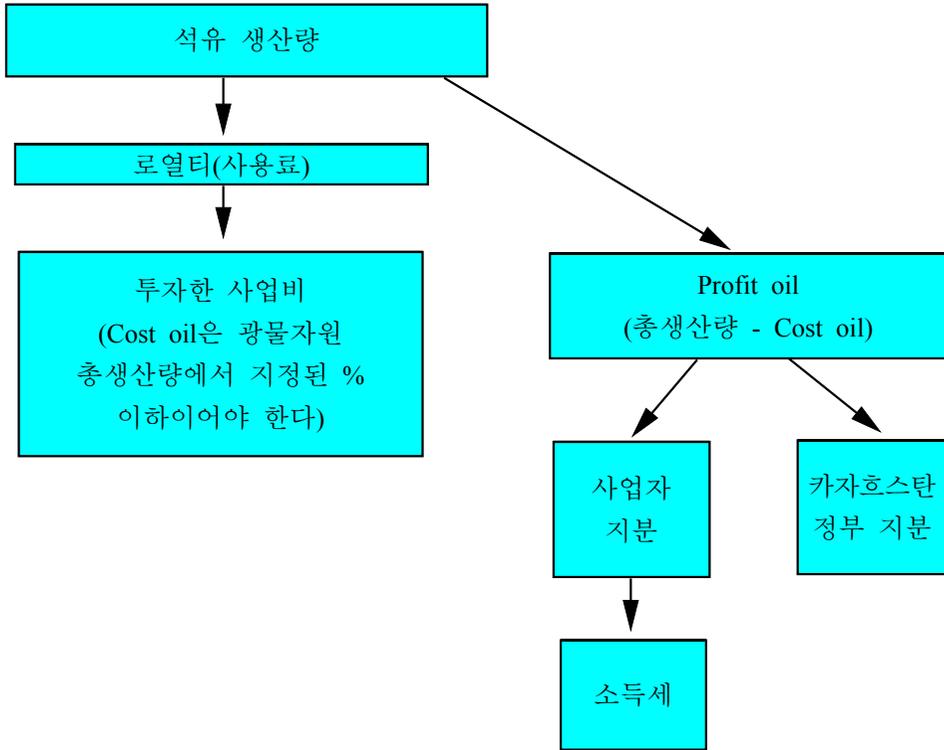
PSA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PSA는 관련정부기관에서 구성된 특별작업분과(Special Working Group)에 의해 입안된다.
- 입찰조건에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승인,’ ‘카자흐스탄에서 의무적으로 일정 석유 정제물량 공급유지,’ ‘첨단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가공제품개발,’ ‘파이프라인 건설,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및 운영 등의 제안서’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이와 동시에 계약자 선택의 주요 기준은 ‘첨단기술이 접목된 가공제품 개발, 파이프라인 건설,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및 운영 등’과 같은 계약의무수행임)
- PSA 계약기간은 탐사 및 개발 35년, 개발 작업 25년 그리고 독특한 매장지에 대해서는 45년임. (계약자가 지하자원사용권 연장을 희망할 경우 계약자는 새로운 PSA 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기관은 이 연장신청의 승인여부를 입찰 없이 고려함)

- 지하자원, 환경 및 보건, 작업 안정성을 위한 기준과 관련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카자흐스탄 법제가 개정될 경우, PSA도 이에 따라 변경됨
- PSA로 계약한 기업들이 세금을 미납 또는 체납할 경우 이들 기업의 기업비밀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 국영 석유 및 가스 기업은 모든 PSA 프로젝트에서 적어도 50%를 참여할 권리가 있다.
- 국영 석유 및 가스 기업, 관련정부기관은 카자흐스탄 정부대표 이외에도 계약자들이 PSA 규정을 준수하여 탐사 및 개발 활동하는지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위원회를 통해 프로젝트 관리에 참여하고 카자흐스탄 정부에 귀속되는 생산물을 확보한다.

카자흐스탄의 생산물분배협약의 구조는 아래 <그림 2>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PSA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총원유 생산량에서 이용료(Royalty)를 제외한 금액에서 사업자가 투자한 사업비(탐사, 개발, 운영비 포함)인 비용회수원유(Cost Recovery Oil)는 사후 정산되나, 초기 과도한 비용회수를 막기 위해 대부분 비용회수원유에는 한도액이 설정된다. 그 범위는 국가마다 다르나 대개 20 - 50 % 내에서 결정된다. 총원유 생산량에서 이용료와 비용회수원유를 제외한 나머지, 즉 이익원유(Profit Oil)는 정부지분과 사업자 지분으로 나뉜다. 이때 사업자 지분은 과세 대상이 된다.

<그림2 > 카자흐스탄의 생산물분배협약 구조



Ⅲ. 지하자원개발권의 양도

1. 개념

지하자원개발권의 양도는 기본적으로 민사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나, 지하자원개발권의 양도(전부 또는 부분적 양도)를 담당하는 에너지광물부(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of Kazakhstan, MEMR)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는 지하자원개발권의 양도를 위한 협의가 체결되기 이전에 신청해서 확보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 협의는 협의가 체결된 때부터 무효로 간주된다. 그리고 1개 이상

의 기업과 관련된 지하자원개발권의 양도는 관련된 모든 기업의 동의가 필요하다.

2. 양도의 제한

카자흐스탄은 2005년 10월 지하자원개발법 개정을 통해, 지하자원개발권의 양도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가하였다. 즉, 정부는 지하자원개발자의 권리의 제3자 양도에 있어, (i) 양도를 받은 제3자의 계약 수행가능성이 불충분하거나, (ii) 에너지 광물자원부로의 지출 정보에 관련한 부정이 있을 경우, 해당 양도를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지하자원개발권의 자회사 양도와 기업상속(승계)이라도 국가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다.

3. 허가 대상

지하자원개발권의 자회사 양도와 기업상속(승계)이라도 관계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지하자원개발권, 담보물을 포함하여 지하자원개발자에게 투자한 지분 등의 상환청구시,²⁴⁾ 법인의 신규투자로 인해 수권자본(authorized capital)이 증가한 결과, 지하자원개발기업에서 분배권(right to share)이 발생한 경우, 지하자원개발기업의 조직화된 증권시장에의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시, 그리고 지하자원개발기업에 투자한 주식의 담보로의 이전 등의 경우에도 관할기관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한편 2008년 12월 개정법은 관할 기관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24) 제3자가 지하자원이용권자의 채무 등을 청산하기 위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하자원이용권을 상환청구를 할 때에는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그러한 법원의 판결이 있어도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 조직화된 증권시장(organized securities market)에서 거래되는 지하자원개발기업의 주식 및/또는 파생증권의 양도거래시;
- 지하자원개발권 또는 지하자원개발기업에 투자한 주식을 100 % 자회사(subsidiary)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경우;
- 지하자원개발권 또는 지하자원개발기업에 투자한 주식을 100 % 관계회사(affiliated company)인 법인 상호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경우

IV. 정부의 우선취득권

1. 개념

지하자원개발권 보유자가 지하자원개발권 전체 또는 일부 양도를 의도하거나, 지하자원개발권을 보유한 기업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지하자원개발권 보유자의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지하자원개발권 또는 주식을 제3자가 구매하기 전에 우선취득권(preemptive right of the State)을 갖는다.

2. 적용범위

정부의 이러한 우선취득권은 2004년 12월 개정으로 새로이 도입된 것으로, 국가의 이러한 권리의 행사는 다른 구매자가 제시한 기간과 조건보다 유리하게 지하자원개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²⁵⁾ 이는 오직 매매거래(transaction on purchase/sale)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2008년 12월 통과된 개정안에서, 정부의 우선취득권은 지하자원개발권 또는 그 지하자원개발자나 지하자원개발권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의 투자주식이 무상 또는 유상으

25) Article 71 of the Law on Subsoil Use

로 양도될 경우에 적용된다²⁶⁾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본 개정으로 인해 정부의 우선취득권은 매매거래는 물론 모든 종류의 거래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3. 행사절차

지하자원개발권의 이전 또는 지하자원개발권 보유자의 결정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주식을 처분하기 전에 지하자원개발자(또는 주식보유자)는 제일 먼저 정부에 이를 제의해야 하고, 카자흐스탄 정부가 지하자원개발권 또는 주식취득을 거부했을 때에 한하여 이전이 가능하다. 지하자원개발권 또는 주식취득여부문제는 에너지광물부(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of Kazakhstan, MEMR)²⁷⁾ 장관이 포함된 정부 위원회에서 검토·결정된다.

구체적인 우선취득권의 행사절차²⁸⁾는 다음과 같다.

- 관할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
- 관할기관은 접수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30일 영업일 이내에 조 직간 위원회(Inter-agency Committee, IAC)에 제출
- IAC는 20일 영업일 이내에 모든 자료를 검토하여 결정
- IAC의 취득결정이 있는 경우, 정부를 대신하여 양수시설(the alienated facility)의 취득권한을 부여받은 공공기관 또는 국영기업 은 15일 이내에 이를 취득 또는 거부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²⁹⁾

26) Article 12 of the draft of the Law on Making Amendments and Supplements in the Law “On Subsoil and Subsoil Use” : the preemptive right of the state applies to cases, when the right to subsoil use or a participating interest (shareholding) in the subsoil user or the entity that influences the decision-making of such subsoil user are alienated on a gratis or non-gratis grounds.

27) 에너지 광물부(MEMR)는 카자흐스탄의 모든 에너지 및 광물자원과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관리 및 정책 결정을 담당한다.

28) Article 13 of the draft Law

29) IAC의 취득권 행사결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나 국영기업은 이를 거부할 권

- 공공기관 또는 국영기업이 취득할 것으로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거래를 종결해야 한다.
- 거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IAC는 관할기관에 이에 대한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4. 행사가격

유상거래의 경우에, 다른 구매자가 제시한 기간 및 조건(terms and conditions)보다 불리하지 않은 기간 및 조건으로 정부는 우선취득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무상거래(gratis transaction)의 경우, 정부는 평가활동법(Law on Appraisal Activities)상 규정된 시가(market price)³⁰⁾에 따라서 취득하게 된다.

V. 정부의 일방적인 계약내용의 변경 · 추가권

1. 개념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7년 10월 지하자원개발법을 개정하여, i) 카자흐스탄 정부는 일정한 경우 계약조건을 변경 및/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ii) 자원개발자가 이러한 변경 및/또는 추가사항을 거부할 경우, 관할 기관은 당해 계약의 이행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있으며, iii) 이러한 개정사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하자원과 관련하여 종전에 체결된 탐사 및 개발 관련 계약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였다.

리가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30) 평가활동법(Law on Appraisal Activities)상의 “시가(market price)”란 가장 가능한(probable) 가격으로서, 거래당사자들이 아무런 위압 없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활동하는 경쟁 환경과 시설물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시설물이 양도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문제점

이러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계약내용의 변경 및/또는 추가권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 주요전략자원의 자의적 판단가능성

위에서 말한 주요전략자원이란, 카자흐스탄 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적으로 중요한 자원으로, 양도시 카자흐스탄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자원으로 정의되며, 소유권(국유 또는 사유)과 관계없이 카자흐스탄 정부가 필요시 전략자원으로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이 주요전략자원인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카자흐스탄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 다만 대표적 전략자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요 원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국가 송전망, 주요 항만시설, 카자흐스탄 정부 및 국민의 전략자원 개발 등의 사업 참여권 등이 있다.

(2) 계약이행에 대한 관계기관의 일방적 거부 가능성

본 법률에 따르면,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자원과 관련한 자원개발 활동에서 자원개발자의 행위가 카자흐스탄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중대한 변경을 가할 경우, 카자흐스탄 정부는 카자흐스탄 경제적 이익보호를 위해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³¹⁾

또한 만일 이러한 카자흐스탄의 계약내용 변경 및/또는 추가요청에 대해 자원개발자가 다음과 같을 경우, 관계기관은 해당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31) Article 45-2 (1) of the draft law

-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계약내용의 변경 및/또는 추가통보를 받은 자원개발자가 2개월 이내에 계약조건의 변경 및/또는 추가를 위한 협상에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상을 거부한 경우;
- 자원개발자가 협상에 참여하였으나, 4개월 이내에 계약조건의 변경 및/또는 추가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 자원개발자가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른 후 6개월 이내에 합의사항이 반영된 신계약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위 조항에 따르면 지하자원개발계약에 대한 이행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이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중대한 변경이라는 것인데, 본 법률은 “중대한 변경(significant change)” 과 “경제적 이익(economic interests)”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중대한 변경” 과 “경제적 이익”이란 개념 또한 각각의 개별 사안에서 카자흐스탄 정부의 자의적 판단 하에 정의될 여지가 크다.

(3) 소급적 효력

카자흐스탄 정부의 계약내용 변경 및/또는 추가권과 자원개발자의 이에 대한 거부/이행지체 시 일방적 계약 종결권은 본 법 개정 이전에 체결된 모든 생산계약 또는 탐사 및 생산계약에도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소급적 효력의 추가는 현행 카자흐스탄 법률에 모순되는 조항은 아니다. 특히 카자흐스탄 민법에 따르면, 만일 계약체결이후에 관계법률이 당사자들에게 강제성 있고 계약체결시 적용된 법률과 다른 조항을 규정할 경우에, 그 법률이 종전에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체결된 계약의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³²⁾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32) Article 383 (2) of the Civil Code of the RK

그러나 본 조항이 말한 소급효가 적용되는 종전에 체결된 계약이란,

- 생산계약(contracts for production); 또는
- 탐사 및 생산계약(combined exploration and production)이다.

결론적으로 본 조항에서 정한 관계기관의 변경 및 추가권은 지하자원개발을 위한 계약유형의 하나인 탐사계약(contract for exploration)에는 적용되지 않게 된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결할 경우, 본 법률은 지하자원개발자에 대한 지하자원 개발사업과정에 발생한 비용의 보상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양측은 계약과기일 이전 또는 계약조건변경 전까지 이행하지 못한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이행할 책임을 가진다. 카자흐스탄 현행법에 따라 지하자원개발사업자는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도 자사의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을 원래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VI. 지하자원개발계약의 종결

1. 기업의 청산

지하자원개발권의 중단사유로서 개발기업의 청산(winding-up)이 이에 해당된다.³³⁾ 따라서 법인들 가운데 하나가 합병이나 분할 등을 통해 청산되는 기업구조조정의 경우에는 해당 지하자원개발기업은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2. 지하자원개발계약의 종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 지하자원개발계약은 종결된다.

33) Article 38 of the draft law

- 사업자가 계약, 작업프로그램(Working Program), 프로젝트 문서(project documents)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사업자가 지하자원개발권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 양도시, 정부의 우선취득권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기간의 만료

위의 계약종결사유는 2008년 12월 지하자원개발법 개정안 제70조의 내용으로, 종전의 계약종료사유보다 그 범위를 확대시켰다. 즉, 사업자가 계약, 작업프로그램, 프로젝트 문서에 대한 어떠한 위반을 하더라도, 관할기관은 계약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종전에는 오직 계약 또는 작업프로그램이 정한 의무의 중대한 위반(material breach)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정부의 계약종결권을 부여하고 있었고, 위반 횟수 또한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2008년 12월 개정안에서는 “2회 이상”이 추가되고, “중대한 위반일 경우”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어, 결과적으로 계약, 작업프로그램, 작업계획에 대한 사업자의 2회 이상의 일체의 위반행위는 관할기관이 당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결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게 되었다.

VII. 자원개발자의 계약파기 또는 이행거부권

2008년 개정법은 계약서상에 정한 사유(근거)가 있을 경우에, 자원개발자는 사법 절차(judicial procedure)에 따라 계약 만료이전에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사유가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자원개발자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³⁴⁾

34) 자원개발자가 계약만료 이전에 계약의 파기를 위하여 카자흐스탄 민법(Civil Code of the RK)상 규정된 파기사유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

제 4 절 석유법

I. 개 념

석유법(Petroleum Law)은 석유, 천연가스, 카스콘텐세이트 등 탄화수소 자원에 대한 탐사 및 재발을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와 계약을 맺은 계약자의 권리 및 의무, 관할기관의 기능과 역할, 계약조건, 그리고 매장된 석유가스자원 탐사, 개발난립 방지 및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지하자원개발법은 광물자원 개발, 석유법은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을 담당하는 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석유법의 탐사 및 개발권 규정들이 지하자원개발법의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지하자원개발법과 보완적인 관계라 할 수 있다.

II. 석유와 가스 부문에서 투자관계의 특징³⁵⁾

1. 의 의

오일과 가스 부문은 카자흐스탄의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오일과 가스 부문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문서로 기록한 법률 문헌이 상당히 많이 있다. 오늘날 카자흐스탄에서 오일과 가스 산업은 투자 없이는 사실상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최근에, 천연자원 개발부문에 대한 투자는 점차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 간의 투자계약은 투자관계를 규제하는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다. 석유와 가스 부문에서 투자관계규율에 있어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35) Alla A. Dzhanaaleyeva, Regulation of Investment Relations in the Oil and Gas Sector, I. Bantekas, J. Paterson and M. Suleimenov (eds); Oil and Gas Law in Kazakhstan: N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2003 Kluwer Law International. Printed in Great Britain, pp. 163-169

2. 계약당사자로서의 국가

오일과 가스부문에서의 투자계약은 국가가 계약의 당사자라는 특징이 있다.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정부기관이 국가를 대신하여 여러 유형의 투자계약을 협상하고 체결한다. 국가가 참여한 투자계약은 보다 복잡한 법적 성질을 갖게 되는데, 이는 계약 당사자(즉, 국가와 투자자)가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갖는 존재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국가는 관할행정기관에 권한을 위임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고 행사하도록 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한다.³⁶⁾ 예를 들어, 증권시장에 관한 RK 법 제6조 1항에 따라서 국가는 증권시장에서 중앙은행(National Bank) 또는 재무장관을 통해서 투자자로서 활동한다.

투자계약 체결과 동시에 국가는 자동적으로 그 지배권한 행사가 중단되며 지배적 존재가 아니라 사법상의 계약당사자로서 활동한다. 국가는 사적 법률관계의 참가자이며, 민사법(civil statue) 조항이 적용된다.

3. 계약의 성질

이러한 유형의 투자계약의 대상은 국가의 배타적 재산인 국가자산이다. “석유 계약(petroleum contract)”은 국가가 참여하는 투자계약의 가장 전형적인 예로, 국가와 투자자간의 관계는 국가소유재산(이 경우, 천연자원)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데, 국가는 투자자(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에게 국가영토에서 천연자원을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한편, 투자자는 자본을 투자하여 그 개발에서 산출되는 일정한 수익을 그 대가로 받게 된다. 이 경우 국가는 국가재산을 개발하게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보다는 국가의 경제적 재산을 확대, 개발, 현대화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석유계약

36) Article 111 (2) of RK Civil Code

은 석유 사업을 위한 계약자와 관할 행정기관간의 계약³⁷⁾을 뜻하며, 이때 관할 행정기관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계약을 협상할 수 있는 직접적 권한을 위임한 국가기관이다. 이러한 유형의 투자계약은 실지탐사, 생산, 오일의 파이프라인 수송 등에 수반되는 모든 활동에 대한 기초가 된다.

4. 국가와 투자자간의 일반적인 계약조건

국가와 투자자간의 계약에는 다음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포함된다.

- 투자자에 의해 수행될 활동, 업무, 서비스의 유형을 확정하는 계약내용
- 계약체결의 허용 및 승인과 관련한 국가의 의무; 비차별적 제도의 확립; 투자자에 의한 국내 상품 및 서비스의 조달
- 생산된 상품에서 투자자의 명의(title)와 관련한 조건
- 수용권(right of expatriation)을 포함한 국가세입과 관련한 조건
- 다음과 관련한 투자자의 의무: 1) 경쟁 상품과 서비스의 기술 및 생산의 이용, 2) 노동관계, 안전, 천연자원의 합리적 보호 및 합리적 이용에 관한 확립된 법적 요건 및 규제; 3) 업무에 대한 자금 조달 조항, 그리고 대출금의 수령보장; 4) 국내 전문가와 기타 근로자의 고용 및 훈련
- 투자계획이 지정된 지역의 산업적 및 사회적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한 국가와 투자자의 상호 의무
- 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와 기타 강제적 지급의 유형 및 형식과 관련하여 투자자와 합의조건
- 투자자의 지배권 하에 있는 영토, 기타 천연자원 및 재산에 대한 국가의 포기에 대한 조건

37) Article 1 of RK Presidential Decree-Law on Petroleum (1995년 6월 28)

- 지정된 범위와 수량내에서 그리고 특정 기간안에 외국상품의 관세영역내로의 수입에 관한 조건
- 계약의 유효 기간, 확대, 정지, 종결을 정하는 조건
- 계약상 준거법과 관련한 조건
- 준거법에 따라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에 관한 조건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계약내용들이 국가와 투자자간에 체결된 석유계약의 모든 내용을 망라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투자계약유형에 따라서 다른 계약조건들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윤의 일부를 재투자하는 의무를 투자자에게 지울 수 있다.

5. 특혜와 우선권의 부여

투자자에게 특혜와 우선권의 부여는, 국내이든 외국이든, 직접투자자에 대한 국가지원에 관한 법률(Law on State Support for Direct Investment)에 기초해 발생한다. 특혜와 우선권은 국가와 투자자간에 체결한 투자계약에 기초해 부여된다. 위 법률에 따른 특혜 공여절차는 다음과 같다.

- 투자자는 우선경제부문에 대한 투자계획의 이행을 위해 특혜공여 신청서를 제출한다(12조 1항).
-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관할행정기관은 관계법률의 준수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견해를 구하고, 그 사실과 결정에 대해 투자자에게 통지한다(12조 2항).
- 관할행정기관의 결정이 내려지면, 당사자(행정기관과 투자자)는 60일(2달)이내에 계약을 작성한다.
- 관할행정기관의 재량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기간은 60일(2달)까지 연장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지 못한다.

- 이 기간 동안, 투자계약서가 작성되고, 이때 행정기관은 독립적인 전문가 등 다른 관련기관들의 지원을 구할 수 있다(12조3항).
- 투자계약서에 당사자가 서명하면 계약은 15일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에 등록되어야 한다(12조4항). 투자신청 및 전문가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국가가 참여하게 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체결의 복잡성은 i)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국가라는 법적실체라는 사실, ii) 체결과정에서 우선경제부문에 대한 투자를 인정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 iii) 투자와 관련한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의 발급을 필요로 한다는 데서 기인한다.

Ⅲ. 석유법의 주요내용

1. 관할기관의 역할

석유법 2장에는 석유 및 가스 사업을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 관할기관, 그리고 국영기업의 역할과 기능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정부는 탄화수소자원 이용에 대한 전략 및 관련 법제를 수립하고, 관할기관은 각 프로젝트에 대해서 총괄적인 관리를 수행하여 이를 정부에 보고하고, 국영기업은 직접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개발 사업을 운영하는 등 상하체계에 따라 각각 역할 및 기능이 주어졌다.

또한 지방기관 및 정부의 역할이 중앙정부나 관할기관과 중첩되지 않고 각 프로젝트 지역에서 관할기관과 같이 환경오염을 감독하는 기능과 중앙정부의 석유가스개발 프로그램을 보조하는 기능만 담당하고 있다. 각 기관의 구체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카자흐스탄 정부

- 석유자원이용에 관한 전략 수립
- 지하자원개발에 필요한 규정 수립
- 각 지역의 석유매장량 감독
- 국가안보, 환경보호, 공공안전 등을 위한 지하자원개발 제한
- 가격정책 수립
- 석유개발지역에서 모든 권한을 가짐

(2) 관할기관

- 계약협상 및 계약체결
- 계약수행 내용에 관한 보고를 매년 카자흐스탄 정부에 보고
- 입찰준비와 지하자원이용권 부여에 대한 협상 수행
- 지하자원이용권 이전 허가 발행
- 석유개발사업 계약조건에 대한 감독 및 관리수행

(3) 지방정부

- 카자흐스탄 토지법에 따라 지하자원개발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에게 해당구역의 토지를 할당
- 지역에 경제적, 환경적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석유, 가스 개발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 수행에 참가
- 석유 및 가스개발사업 지역에서 관할기관과 함께 환경오염을 감시하고 문화 및 역사적 기념물을 보호
-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위해 계약자와 협상

(4) 국영기업

- 석유자원개발 사업에 참가
- 카자흐스탄 정부가 결정한 순서에 따라 참여지분을 통하여 석유 개발

- 석유개발을 위한 입찰에 참가
- 신규프로젝트 준비와 실현

2. 계약기간

탐사계약의 기간은 6년이고, 2년씩 2번 연장할 수 있어, 탐사기간은 총10년으로 간주된다. 생산계약의 기간은 25년이나, 가채매장량이 석유 1억 톤, 천연가스 1억 입방미터일 경우 40년으로 주어진다. 그리고 계약자와 관할기관 양자 합의에 따라 생산계약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탐사와 생산을 합쳐 계약한 경우 연장은 각각 탐사와 생산 기간 연장 규정에 따른다. 계약조건은 카자흐스탄 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 당사자들 간에 상호승인 후 카자흐스탄 정부의 승인으로 결정된다.³⁸⁾

3. 석유계약시 필요한 요건

석유계약(Petroleum Contract)은 다른 민사계약(civil contract)과 동일한 방식으로 체결되나, 석유명령(Petroleum Decree)은 그 협상과 집행에 필요한 많은 별도의 요건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서명하기 이전에, 석유계약은 보건의료(healthcare), 공중보건(public health), 환경(environment), 지하자원의 보호 및 광산의 안전(protection of the subsurface and mining safety)에 책임을 지고 있는 관할기관과 합의가 이루어 져야하며, 이 절차는 해당 집단의 계약 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³⁹⁾
- 계약은 전문가 평가를 위한 계약서의 제출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경제적 및 법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⁴⁰⁾

38) 이현복, 카자흐스탄 지하자원개발 관련법에 관한 고찰, 한국시베리아연구 제11집 (2007)

39) Petroleum Decree 27조 1항

- 계약은 카자흐스탄 정부에 등록되어야 하고,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은 나중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⁴¹⁾

4. 천연가스의 탐사 및 생산

계약자는 천연가스의 상업적 발견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생산시작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면서 탐사를 시작,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천연가스 매매가 이루어져 매장지로부터 매입지까지 수송이 확보되기 전까지 계약자는 천연가스 생산을 할 수 없고, 관할기관은 천연가스 생산을 요구할 수 없다.

계약자가 1년 동안 천연가스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 관할기관은 계약자에게 제3자와의 매매협상을 합리적인 조건하에 종결하도록 종용할 수 있다. 만일 계약자와 관할기관이 결정한 제3자가 협상타결에 이르지 못한다면, 계약자와 제3자는 카자흐스탄 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5. 사고 및 환경오염

계약자는 석유 및 가스개발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인명사고, 보건, 환경오염, 설비손실을 초래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조치방법들을 개발해서 매년 관할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석유개발시작 이전과 개발사업기간 동안 지하자원이용자는 주변 환경변화를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조사해야 한다. 만약 환경보호지역에서 계약자가 석유개발사업을 할 경우, 오염이 발생했을 때 계약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오염을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

40) Petroleum Decree 27조 2항

41) Petroleum Decree 27조 3항

6. 탐사비용의 보상

탐사와 생산기간동안 소요된 계약자의 비용은 관할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탐사기간 동안 소요된 비용은 다른 조건이 특별히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생산이 시작된 후에 생산된 탄화수소자원을 할당하여 계약자에게 주어진다.

다른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계약자는 만 1년간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위해 생산된 석유가치의 50%를 초과하게 요구할 수 없다. 비용이 만1년간 보상되지 않았다면, 다음 1년으로 보상기간이 연장된다.

7. 파이프라인

메인 파이프라인의 소유권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갖고, 관리 역시 파이프라인 소유자 즉 카자흐스탄 정부가 하는 것이 기본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파이프라인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승인으로, 기술적 관리, 안전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이 운영 규정은 파이프라인에 관계된 모든 관련정부기관, 기업, 토지 사용자에게 적용된다. 지방기관 및 지방정부는 펌프, 비축, 수송 등 파이프라인에 관계된 운영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에너지 공급 기업은 파이프라인 소유권자의 승인 없이 파이프라인을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파이프라인의 안전지역에서 어떠한 형태의 작업도 소유자의 승인 없이 시행될 수 없다.⁴²⁾

제 5 절 소 결

카자흐스탄 정부의 경제발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에너지 및 광물 자원산업으로, 이 산업의 생산물 수출을 통

42) 이현복, 카자흐스탄 지하자원개발 관련법에 관한 고찰, 한국시베리아연구 제11집 (2007)

해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카자흐스탄 경제발전의 기본 틀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장려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지하자원개발법에 대한 일련의 개정들은 자국의 광물 및 에너지 자원에 대한 항구적 주권을 확립하여 자국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카자흐스탄에 지하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외국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특히 일련의 개정들로 인해 아래와 같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 카자흐스탄 정부는 무엇이 주요 전략자원인가에 대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자의적 판단권을 주고 있다.
- 무엇이 카자흐스탄의 “경제적 이익” 또는 카자흐스탄의 “국가안보”에 “중대한 변경(material alteration)”을 가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은 채, 정부의 계약 변경 또는 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
- 정부의 일방적 계약종결사유를 사업자의 계약, 작업프로그램, 작업계획상의 의무에 대한 일체의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에게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카자흐스탄 정부가 우선취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을 무상계약에 의한 지하자원이용권의 양도에도 적용시켜, 정부의 우선취득권 행사대상을 확대시켰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우리나라의 투자나 사업에 있어, 사업가는 카자흐스탄의 지하자원개발법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제 4 장 카자흐스탄의 에너지개발 관련 법제 및 정책

제 1 절 개 요

카자흐스탄은 구 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 독립된 국가들 중 가장 국토면적이 넓고, 다양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지리적으로 중동에 이어 최대 석유 생산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카스피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관심도와 투자금액이 증가되고, 2000년대에 접어들어 국제 유가상승에 힘입어 막대한 양으로 매장된 석유를 생산 및 수출하여 카자흐스탄은 연간 9%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그 동안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성과라 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에너지개발 산업의 육성 및 경제성장을 위해 최근 약 10년간 수차례 관련법제 및 정책들을 개정하고 수정하여 주변 CIS국가보다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나갔다. 그 대표적인 법률로서, 투자법, 세법, 이전가격법, 외환관리법 등이 있다. 이하에서 카자흐스탄의 에너지개발 관련 법제 및 정책들에 대해 검토한다.

제 2 절 투자법

I. 개 념

카자흐스탄은 1991년 구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독립한 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경제발전을 위해 투자 유치를 추진해왔다. 특히 자국내 부존되어 있는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을 개발하여 유럽 등지로 수출하여 경제발전을 이루려는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 관련법을

제정하여 외국자본을 도입하여 석유, 가스 가원개발 및 생산 산업발전의 걸림돌인 자본력과 기술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종 투자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투자문호를 개방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자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하는 등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1994년 12월 외국인투자법 제정이후 두 차례의 개정(1997년 6월 및 2000년 3월)을 거쳐 2003년 1월에 외국인 투자법(1994. 12)과 직접투자에 대한 국가지원법(1997년)을 통폐합한 지금의 투자법을 제정하였다. 투자법은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바탕 하에 우선 투자부문을 지정, 분쟁 발생시 중재 등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기해온 문제점들을 보완하였다.

<표 2> 투자법의 주요내용

	주요내용	비 고
내·외국인 구분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외국인 투자법 폐지 • 투자자를 내외국인 구별없이 카자흐스탄에 투자하는 개인, 법인으로 규정 	1조6항
투자법의 지위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법의 예외사항을 없애고 ‘기타 법규에 우선 적용’ 조항 삭제 • 투자 실행상 카자흐스탄의 타법률에 영향을 받는 사항에 대한 동법의 적용 배제 • 외국인 투자자의 실질적 투자운영과 관련 카자흐스탄 관련 법규를 직접 적용 	2조3항
국유화 및 수용관련 투자보장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화 및 국가 수용에 대한 보상은 존속 • 구법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카자흐스탄 법률에 규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인정 	
환경 안정성 보장조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법에서는 법률 변경에 의한 투자자 지위 약화시 투자 당시 법률 최소 10년 적용규정 	4조3항
투자 안정성 보장조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법은 국익, 환경보호, 보건, 사회풍속관련 등 법규변경시와 물품의 수입, 제조, 판매 절차 및 조건 관련 법규 제정시 보장 예외를 명시 	
우선투자분야 지정 및 우대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자흐스탄 정부가 세부 우선투자분야 지정 • 우선투자분야에만 관세, 조세 등 혜택을 부여 조세, 관세의 우대기간을 5년으로 한정 	
투자 분쟁 중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분쟁의 경우 당사자 합의시 국제 중재기관 제소가능조항 존속 • 투자분쟁에 포함되지 않는 분쟁은 카자흐스탄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 	

	주요내용	비 고
외환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법상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외환의 지체없는 국내의 이전보장 조항을 삭제 	

자료: KOTRA

II. 투자법의 구체적 내용

1. 주요개념

(1) 투 자 (Investments)

2003년 투자법 제1조 1항은 “투자(investment)”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임대차 계약(lease agreement) 체결이후의 임대차 대상을 포함하여 투자자가 법인 자본금에 투자하는 대상에 대한 임차권, 혹은 기업 활동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자산(개인의 소비를 위한 제품은 제외)

1994년 외국인 투자법은 이윤(또는 수입)을 얻기 위한 자산과 기타 형태의 재산을 구분하여, 투자를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기업활동의 대상에 투자하는 모든 형태의 물질적·지적 자원”⁴³⁾으로 정의하였다. 문언 자체는 변경되었지만, 그 개념과 일반적인 특징은 본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 2003년 법 제1조 1항에서 정한 “재산(property)”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그것의 대상이 대출투자(loan investment)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인 투자와 재산 및 비재산적 투자를 모두 망라함을 의미한다. 이 법은 그러나 정부 예산을 이용한 투자활동(State funds)과

43) Article 1 subparagraph 1 of 1994 Law on Foreign Investment

비영리 기관에 대한 자본투자, 교육, 자선사업, 과학 및 종교적 목적을 가진 기관에 대한 투자는 관여하지 않는다.⁴⁴⁾ 또한 이 법은 오직 국내로의 투자(inward investment)만을 다루고, 이른바 “재산적 투자(property investments)”에 대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2) 투자활동(Investment activity)

개인이나 법인의 자본금에 대한 참여활동 혹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고정자산 증대 및 형성활동

(3) 투자 특혜(Investment preferences)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카자흐스탄 법인에게 제공하는 투자 특혜

(4) 투자 프로젝트(Investment Project)

새로운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를 하고, 현재의 생산을 확대하거나 재개하는 종합적인 활동(사업)

(5) 투자 분쟁(Investment dispute)

투자자의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투자자와 정부 기관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

(6) 투자자(Investor)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에서 투자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7) 국가의 현물그랜트(State in kind grants)

투자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법인에게 자산이나 토지 사용권 등의 형태로 무상제공되는 카자흐스탄 소유 자산

44) 2003 New Investment Law, Article 2 (2)

(8) 계약(Contract)

투자 특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투자 계약

(9) 표준계약서(Model Contract)

카자흐스탄 정부가 확인하고 계약체결 시 사용하는 전형적인 계약서

(10) 관할기관(Authorized Body)

계약 체결 및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권리를 가진 중앙집행기관

(11) 카자흐스탄 법인(Legal entit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카자흐스탄 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 법인을 포함한 모든 법인

2. 투자자 보호

(1) 수용이론의 적용

2003 투자법은 국제법을 카자흐스탄 국내법의 일부로 자동적으로 수용하는 형식, 즉 수용이론(incorporation doctrine)⁴⁵⁾을 채택하고 있다. 구체적 조항으로서, 제2조는 “카자흐스탄이 비준한 국제계약이 현행법과 다른 규칙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국제계약의 내용을 준수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을 구속하는 국제법률은 이에 반대되는 카자흐스탄 법률에 우선한다는 것이 본 조항의 취지이다.⁴⁶⁾

45) 국제법을 국내법 질서 내로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 내지 받아들이는 방법을 결정하고 국내법 질서 내에서 국제법의 위계를 설정하는 문제는 헌법적 결단에 맡겨져 있다. 주로 국제법을 국내법의 일부로서 자동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국가와 국제법이 의회의 입법, 사법부의 판결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국내법으로서 채택이 되어야만 국내법 질서의 일부를 형성할 수 있는 국가로 크게 대별될 수 있다. 전자와 같은 방식을 受容理論(doctrine of incorporation or adoption)이라 하고, 후자를 變形理論(theory of transformation)이라 한다.

46) 국제법에 관하여 수용이론(doctrine of incorporation)을 적용하는 것이 CIS의 관행이다.

(2) 투자에 대한 보상

2003 투자법은 “투자가는 카자흐스탄 법에 적법하지 않은 규정을 정부기관이 제정한 결과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카자흐스탄 민법에 따라 정부 기관 대표가 행한 위법적 작위(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다”⁴⁷⁾고 규정한다. 이는 국가기관 또는 공무원에 의해 저질러진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그러한 행동이 카자흐스탄법률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보상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상의 조건과 절차들이 카자흐스탄 민법에 따라 유효하게 결정될 수 있지만, 해당 국가의 행위가 부적법한지 여부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국제법에 의거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본 조항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위 조항의 목적은 오직 정부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 보상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만일 작위 또는 부작위가 국제법의 관련 규범을 위반하였으나 카자흐스탄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다.

한편, 카자흐스탄법에 반하나 국제법에는 반하지 않는 국가기관의 작위 또는 부작위는 카자흐스탄의 절차법 및 실체법에 따라 규율된다. 국가기관의 작위 또는 부작위, 혹은 계약의무의 위반은 그러한 행위가 수용(expropriation)의 형태로 간주될 경우에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만일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당해 문제는 국내법과 국제법 모두에 따라서 규율된다.⁴⁸⁾

47) Article 4 (2) of the Investment Law

48) 국제법이 실체적 내용을 정하고, 국내법이 보상절차를 결정하게 된다. Ilias Bantekas, *The 2003 Investment Law-Its Impact and Compatibility with International Foreign Investment Law*, I. Banatekas, J. Patertson and M. Suleimenov (eds.); *Oil and Gas Law in Kazakhstan: N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2003 Kluwer Law International) pp .174-175

따라서 외국투자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적절한 분쟁해결조항 (appropriate dispute settlement clauses)을 주최국 정부(host government)와의 계약에, 일체의 분쟁은 중립적 중재(neutral arbitrators)에 의해 해결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외교적 보호방법을 선택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3) 투자계약조건의 안전성 보장

정부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자흐스탄 정부기관과 투자자간에 체결된 모든 투자계약조건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 과세대상상품(excisable goods)의 수입, 생산, 또는 판매의 절차나 조건을 변경시키는 관련법률 또는 국제조약이 개정된 경우; 또는
- 국가안보를 이유로, 또는 환경, 보건, 또는 도덕을 보장할 목적으로 법률개정이 이뤄진 경우⁴⁹⁾

2003년 법은 이전 법률제도와는 달리, 기존 계약에 대한 계약안정조항에 대한 시한을 정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내용은 1997년 직접투자에 대한 정부지원법에 따라 존재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1997년 정부지원법은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보상을 심각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입법적, 행정적, 기타 다른 조치들을 자본유입국이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한 ‘안정조항(stabilization clauses)’을 마련하고 있었다.⁵⁰⁾ 2003년 법 제4조3항의 적용이 그 소급적 성격으로 인해 어느 정도 국제법 위반을 수반하여 새로운 투자에 적용한다고 해서 아무런 법률문제를 일으키지 않겠지만,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증진한다는 데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⁵¹⁾

49) Article 4 (3) of the Investment Law

50) T. Walde and G. Ndi, *Stabilising International Investment Commitments: International Law versus Contract Interpretation*, 31 *Texas Int'l L.J.* (1996), p. 31.

51) Illias Bantekas, *The 2003 Investment Law-Its Impact and Compatibility with International*

어떠한 경우이든, 카자흐스탄에 투자하는 외국회사는 국제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같은 다양한 정치적 위험보험제공자(political risk insurance providers) 또는 해외민간투자공사(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OPIC) 같은 국립보험원(national insurance institutes)으로부터의 일체의 정치적 위험에 대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3. 수 용

(1) 수용의 한계

수용의 문제는 2003년 투자법에서 중요하다. 정부의 수용권(right of expropriation)이 주권주의(principle of sovereignty)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것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즉, 전시에 방어목적으로의 수용 같은 특정 공익 목적을 위한 수용은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합법적이다. 그러나 재산의 특정 아이템의 수용 또는 주요 산업이나 자원의 수용은 적절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은 한 불법이다.⁵²⁾ 따라서 만일 적절한 보상이 지급되면, 비로소 위에서 언급한 수용은 합법적이게 된다. 동일한 원칙이 간접적 수용(indirect expropriations),⁵³⁾ 즉 외관상 국가행위(disguised State action)에도 적용된다.

(2) 수용절차

카자흐스탄 정부의 투자자 재산에 대한 국유화는 예외적 상황에서 허용되고, 다음의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

Foreign Investment Law, I. Banatekas, J. Patertson and M. Suleimenov (eds.); Oil and Gas Law in Kazakhstan: N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2003 Kluwer Law International) p .175.

52) I.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1998), pp. 540-541.

53) 예를 들어, 직접 수용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차별적 입법

- 카자흐스탄 법에 따라 특별한 경우에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투자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사용정지(국유화, 몰수 등) 시킬 수 있다.
- 재산을 국유화할 경우,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스탄 국유화법에 의거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해를 100% 보상해준다.
- 투자자의 재산을 몰수했을 경우, 현 시세에 따라 재산 가치를 계산하여 지불한다. 현 시세에 따른 재산 가치 계산 작업은 카자흐스탄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한다.
- 소유자에게 상환된 몰수 재산가치의 평가결과는 법정에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몰수와 관련된 상황이 중지되거나 취소되었을 시, 투자자는 재산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때 보상 받았던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재산의 가치절하된 부분을 계산한 후).

이 경우, 투자자는 국유화된 재산의 市價에서의 모든 손실들에 대하여 완전히 보상받는다. 이때의 시가는 카자흐스탄 법률에 따라 평가될 것이나 그 평가는 법원(in court)에서 반박될 수 있다. 수용시 그 보상은 충분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국제법에서 널리 인정되어 있다.⁵⁴⁾ 지급의 양, 방법, 시기는 수용의 시기에 카자흐스탄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근거하여 평가될 것이다.

4. 투자에 대한 특혜

(1) 개념

투자자들에게 순조로운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신규 생산 시설 및 기존 생산시설의 확장 및 개선을 위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 특혜제공을 통한 투자자에 대한 국가지원이 투자법에 명시되어 있다.

54) 그러나 신속성의 결여(Lack of promptness)와 지급의 유예(deferred payments)는 보상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I.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1998), p.546)

투자특혜란 투자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카자흐스탄 법인들에게 부여되는 선별적 성격의 특혜로서, 외국인 투자자가 카자흐스탄에서 투자활동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투자자는 카자흐스탄에 반드시 법인을 설립해야만 투자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투자법은 투자자가 정부에서 지정한 투자우선분야⁵⁵⁾에 투자할 경우 정부의 현물공여(부동산, 설비 등), 조세 및 관세감면 등에 대한 투자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고, 법률에 따라서 투자 인센티브의 담당기관인 무역산업부내 투자위원회(Committee of Investment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가 세제혜택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2) 투자특혜의 유형

정부가 부여하는 투자특혜의 유형은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① 투자세제특권(investment tax privileges)

세제특혜가 제공되는 기간은 사업의 형태와 고정자산에의 투자 규모를 고려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판정한다.

②관세면제(exemption from customs duty)

관세면제는 투자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한 장비나 부품을 수입할 때 부여된다.

③ 국가의 현물공여(state grants in kind)⁵⁶⁾

국가 현물(국가소유자산)공여는 국가 자산 및 토지 자원관리를 담당하는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투자청 및 지방행정기관에 의해서 실시

55) 카자흐스탄 정부가 지정한 투자우선부문은 카자흐스탄 정부 Resolution No. 436 (2003. 5. 8.)에 수록된 것으로 농업활동, 식품, 의복, 종이, 섬유, 비금속광물, 기계 및 설비의 생산, 화학제품 생산, 건설, 수송, 숙박 및 요식 등의 서비스업 등이다.

56) Article 13 of the Investment Law (Types of Investment Preferences)

적으로 무상사용 또는 토지 이용권이 제공되며, 투자청과의 계약에 따라 투자의무이행이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장기간 토지 이용권으로 전환된다.

(3) 제공절차

투자법상의 특혜제공절차는 다음과 같다:

- 투자 특혜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승인한 우선적인 활동목록범위에 속하는 투자활동을 수행하는 투자자에게 제공된다;
- 카자흐스탄 정부는 각각의 우선적인 활동에 대해 확인하고 공인 기관에 투자특혜를 제공할 때 투자 최대 규모와 투자세 특혜 적용기간 등을 규정한다;
- 국가가 정한 투자 규모를 초과했을 경우 투자세 특혜 적용기간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
- 투자 특혜는 투자가와의 계약체결을 통해 제공된다.⁵⁷⁾

투자특혜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승인한 우선 투자대상 산업분야에 한해 제공되며, 각 우선산업분야별 투자한도금액과 인센티브 제공기간도 정부가 각각의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개별심사, 인센티브 공여 여부 및 수준 결정 등은 카자흐스탄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산하 조직인 투자위원회(Committee on Investments)에서 실시한다. 투자 규모가 클 경우에는 관련 정부부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57) Article 14 of the Investment Law (Procedure for Granting Investment Preferences)

(4) 제공조건

투자특혜 제공조건으로는 다음과 같다:

- 투자자의 투자활동이 우선적 투자활동목록의 범위에 속하고;
- 새로운 투자유치 및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현 생산 확대 및 재개를 위해 카자흐스탄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시; 그리고
-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는 투자자의 잠재력(재정적, 기술적, 조직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시(제19조에서 규정)⁵⁸⁾

현재 투자특혜가 부여되는 우선투자활동목록은 2003년 5월 8일자 투자법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카자흐스탄 정부명령 No.436에 의해 승인을 얻은 것이다.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활동이 우선투자활동목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카자흐스탄 통계청(Statistics Agency)에 서면 조회를 해야 한다.

(5) 구비서류

투자특혜 공여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로는 다음과 같다.

- 공증 받은 국가 법인 등록 증명서 사본
- 공증 받은 통계 카드(statistic card) 사본
- 공증 받은 법인 정관 사본
- 공인기관이 규정한 요구조건에 따라 작성된 투자 프로젝트 사업 계획서
- 투자 프로젝트 시행 시 사용되는 고정자산 획득에 필요한 비용 및 건설-수리 견적비용 관련 서류
-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공급 보장 및 자금공급 주체를 확인하는 서류

58)Article 15 of the Investment Law (Terms of Granting Investment Preferences)

- 투자자가 요구하는 국가 현물그랜트의 규모(가격)를 확인하는 서류와 국가 현물그랜트를 제공하겠다는 예비 동의서⁵⁹⁾

(6) 심사기간

관할 기관에 투자특혜 신청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들이 제출되면, 제출된 투자특혜신청서를 심의할 때 관할 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검토한다:

-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계획서
- 자금 조달원천
- 고정자산획득에 대한 지출 증빙
- 세금 및 공과금 납부 사항

심의결과는 정해진 양식의 의견서로 작성 교부되며, 특혜공여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투자자와 관할기관간에 구체적으로 프로젝트에 따른 투자 특혜의 규모와 형태를 명시하는 계약이 체결되고, 각 기관(세무서, 관세청 등)에 교부되어 해당 특혜가 적용된다.

특혜 제공 여부에 대한 심사결과는 투자특혜 공여 신청이 투자위원회에 등록된 시점부터 30일 근무일 이내에 신청 법인에게 통보된다.⁶⁰⁾ 특혜 공여 신청 서류의 접수, 등록, 심사 등의 절차는 투자위원회가 정한다.

(7) 투자특혜 유형별 내용

① 투자세 특혜

2003년 법 제16조는 투자세 특혜(investment tax privileges)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세제혜택의 제공기간은 투자산업 분야의 유형 및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규모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투자프

59) Article 19 of the Investment Law (Requirements to Application for Investment Preferences)

60) Article 20

로젝트마다 다를 수 있다. 또한 특별세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법인의 활동이나 지하자원 개발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과, 정부로부터 현물 공여된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본 세제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⁶¹⁾

개별 투자 프로젝트마다 세제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줄지 여부와 그 기간을 몇 년으로 할지의 여부는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투자 규모가 일정수준이상일 경우 관련 정부부처에서 정한다. 특혜 적용 개시일자는 카자흐스탄 조세법(Kazakh Tax Code)에 부합하는 내용의 계약에서 결정될 것이다.⁶²⁾

세법 138조에 따른 투자세 특혜의 내용은, 법인세, 재산세, 토지세 등의 면제이며, 투자법 제14조 2항에 따라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각 우선부문에 대하여 투자위원회가 부여한 투자세 특혜의 최대 규모와 기간을 확정한다.

한편, 개정세법이 2009년 1월 1일에 시행되면서 종전에 비해 투자세 특혜가 감소되었다. 개정세법에 따르면, 오직 한 가지 유형의 투자세 특혜만 규정하고 있는데, 카자흐스탄 우선부문에 대한 영업활동에 대한 투자프로젝트에서, 영업활동에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건설, 기계, 설비 등에 대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현지법인의 공제권이 그것이다.⁶³⁾ 또한 법인세 특혜는 제조 작업이 이행될 때 기계 및 설비 등의 공장건축에 사용한 초기비용을 3년 이내에 혹은 한번에, 동일비율(equal ratio)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⁶⁴⁾ 개정세법은 법인세, 토지세, 재산세에 대한 100% 면세를 정한 조세특혜를 정하고 있지 않다.

61) Article 16 (3) and (4) of the Investment Law

62) The date of commencement of applying investment tax privileges shall be determined in the contract in compliance with the Tax Cod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Article 16 (2)).

63) Article 123 of the New Tax Code

64) Article 125 of the New Tax Code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계약에 대해서는 투자세 특혜가 여전히 부여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의 만기일까지 투자세 특혜는 유효하다. 또한 법인세 비율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월 1일까지는 20%,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월 1일까지는 17.5%, 2011년 1월 1일부터는 15%의 비율로 과세된다.⁶⁵⁾

따라서 2009년 1월 1일 이후 카자흐스탄에 자본을 투자한 투자자들은 최대 3년 동안 공제권(right of deduction) 을 가지며, 법인소득세 비율(20% in 2009; 17.5% in 2010; and 15% in 2011)로 납세하게 된다.

② 관세감면

관세의 면제(Exemption from Customs Duties)에 관한 내용은 관세법(Customs Code) 제330조 6항이 정하고 있고, 투자법 제17조가 투자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수입된 장비 및 그 부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 또는 부품을 수입할 경우 이에 대한 관세는 면제된다.

- 카자흐스탄에서 비슷한 종류의 설비 및 부품이 없는 경우
-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는 설비 및 부품이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부족할 경우
-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는 설비 및 부품이 투자 프로젝트에 필요한 설비 및 부품과 맞지 않을 경우⁶⁶⁾

관세면제기간은 기본 1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계약 등록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⁶⁷⁾ 관세면제 및 그 기간연장에

65) Article 147 of the New Tax Code; Article 4 of Law of the RK “About entering into force the Cod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About taxes and other obligatory payments in the budget.’”

66) Article 17 of the Investment Law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67) Article 17 (2) of the Investment Law

관한 결정은 관할정부기관(투자위원회)이 내리며, 결정내용을 카자흐스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하 관세위원회(Committee on Customs)에 통보해야 한다. 해당 법인은 재무부 산하 관세위원회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

③ 국가 현물공여

카자흐스탄 정부의 소유로 돼 있는 현물도 투자법인에게 특혜의 일종으로 제공된다. 투자 소관 정부기관(주로 투자위원회)은 국가 자산 및 토지 관리 당국과의 조율을 거쳐 투자법인에게 현물에 대한 무상 임시 사용권이나 무상 임시 토지 사용권을 공여한다. 요청접수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국가 공여에 대한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⁶⁸⁾

투자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부 공여 현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토지 구역(Land plots)
- 빌딩(Buildings)
- 건축물(Constructions)
- 기계 및 설비(Electronic devices and equipment)
- 컴퓨터기기(Computing techniques)
- 조정 장치 및 설비(Measuring and control equipments and devices)
- 교통수단(Vehicles)(경자동차는 제외)(except light vehicles)
- 생산 용품 및 가정용품 등이 있다(Production and organizational stock)⁶⁹⁾

국가 현물공여는 카자흐스탄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현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국가 현물공여의 최대규모는 카자흐스탄 법인의

68) Article 18 (1)

69) Article 18 (2)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규모의 30%를 초과하지 않는다. 만약, 투자법인이 신청한 공여현물의 가격이 투자규모의 30%를 초과할 경우, 그 법인은 그것의 평가가치와 국가현물 공여의 최대가치의 차액(초과차액)을 지불하는 조건하에 신청한 공여현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⁷⁰⁾

세금투자특혜와 국가의 현물공여 가운데, 투자자는 동시에 오직 한 가지 종류의 특혜만을 이용할 수 있는 선택적 관계(alternative option)에 있다.

(8) 투자권의 보장 및 양도

투자자의 권리는 카자흐스탄 헌법, 투자법, 카자흐스탄 정부가 서명한 국제조약 등에 근거하여 보호되며,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

계약조건이 계약자 쌍방의 합의로 바뀌거나, 아래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조건이 유효성이 보장된다.

- 소비세 대상 품목의 수입, 생산, 판매의 절차 및 조건을 규정하는 법류 수정
- 환경, 국민보건, 도덕적 문제를 보장하려는 목적의 법규 수정

정부에 의해 카자흐스탄 법에 위배되는 규정이 제정되거나, 공무원의 불법적 행위 혹은 태만에 의해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 투자자는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9) 계약의 체결과 파기

특혜관할기관은 투자 특혜제공에 대한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견본계약서 작성규칙에 의거하여 계약서를 체결할 준비를 한다. 계약서는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기관이 등록하고, 등록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⁷¹⁾

70) Article 18 (3) and (4) of the Investment Law

71) Article 21 of the Investment Law

투자 특혜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투자법 제22조는 계약의 정당한 만료일 이전에 그 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쌍방의 명시적 합의에 의해, 혹은 소관 기관의 일방적 결정으로 일어날 수 있다. 소관기관의 일방적 통보로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투자 특혜 제공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은닉하였거나,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가 왜곡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투자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 경우 소관기관은 계약 파기에 대한 서면상의 통보를 하고, 3개월을 기다린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이때, 투자자는 투자특혜계약 때문에 지불하지 않았던 세금 및 관세, 그리고 카자흐스탄 법에 따른 (그의 사전 및 사후 계약 이행실패로 인한)벌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⁷²⁾

이러한 세금과 관세를 지불할 의무는 계약이 투자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또는 당사자들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종결된 경우에도 발생한다. 즉,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 만기일 전에 계약을 파기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 특혜 계약 때문에 지불하지 않았던 세금 및 관세, 그리고 카자흐스탄 법에 따라 추가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계약 만기일 전에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도 위와 같다. 계약 만기일 전에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투자자는 정부가 국가현물공여의 형태로 제공했던 자산을 현물로 반납하거나, 계약서 조건에 따라 제공받았던 시가의 가격으로 반환해야 한다.⁷³⁾

72) Article 22 (1), (2), and (3) of the Investment Law

73) Article 22 (4), (5), and (6) of the Investment Law

5. 분쟁의 해결

(1) 개념

국제투자중재(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는 외국투자자와 정부 기관간의 분쟁해결수단으로 점차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관련 정부로 인해 야기된 심각한 손해 또는 의무의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을 투자자들에게 부여한다는데 특징이 있다.

분쟁이 국제중재재판에서 심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간의 사전합의가 필요한데, 국제상사중재(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의 경우는 그러한 합의가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만, 국제투자중재(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의 경우는 투자자의 국가와 투자유입국간에 투자협정(investment agreement)에 정부가 동의해야 한다.⁷⁴⁾ 투자협정에는 투자자의 권리, 즉 정부의 수용 또는 차별적 취급의 경우에 보상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무엇이 차별적 태도이고, 어떤 보상이 지급될 지는 구체적 사실 및 준거법에 근거하여 중재자(arbitrator)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2) 법률의 규정

2003년 투자법에 따르면, 투자자는 이익과 권리에 대한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보호를 받고,⁷⁵⁾ 투자관련 분쟁이 있을 시에는, 전문가가 참여하거나 기존에 쌍방이 동의한 분쟁해결절차를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 해결하며,⁷⁶⁾ 이에 따라 투자관련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시에는 카자흐스탄 법정에서 국제조약과 카자흐스탄 법에 의거하여 해결하거나, 국제중재재판소에서 해결한다고 규정한다.⁷⁷⁾ 또한 투자와 관련이

74) 카자흐스탄은 현재 39개 투자협정의 당사국이다.

75) Article 4 of the Investment Law

76) Article 9 (1) of the Investment Law

77) Article 9 (2) of the Investment Law

없는 분쟁은 카자흐스탄 법에 따라 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⁷⁸⁾

한편, 투자분쟁(investment dispute)에 대해 “투자자의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투자자와 정부기관간의 계약적 의무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정의⁷⁹⁾하고 있다.

(3) 문제점

투자분쟁에 대해 “투자자와 정부기관”의 “계약적 의무”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정의하고 있어, 정부의 관할기관과 투자자간의 비계약적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은 투자분쟁의 개념에서 제외되고, 투자자간 분쟁 발생시에 카자흐스탄 법률이 적용되어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리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일부 외국투자자들은 투자법상 투자분쟁에 민간 투자자들간의 분쟁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6. 우리나라와의 투자협약

현재 카자흐스탄은 32개의 국제협약 및 29개의 상호투자보호 진흥조약에 서명하였고, 카자흐스탄은 CIS 국가⁸⁰⁾ 투자자 권리보호 협회에 가입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에 카자흐스탄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투자협약 제2조에 따르면 각 체약국 당사자 투자자의 투자는 타당 체약국 당사자의 영역내에서 항상 공정, 공평한 대우를 부여 받으며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각 체약국 당사자는 타방 체약국 당사자 투자자에 의한 자국 영역 내 투자의 관리, 유지,

78) Article 9 (3) of the Investment Law

79) Article 1 of the Investment Law

80)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ce State, CIS)은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기존의 공화국 중 12개국이 결성한 정치공동체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로 구성된다.

사용, 향유 또는 처분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통하여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투자협약 제6조에 따르면, 각 계약국 당사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타방 계약국 당사자의 투자자가 자유 태환성 통화로 지체 없이 자국 영역 밖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 타방 계약국 당사자 투자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투자의 판매 또는 전면적 부분적 청산으로 인한 수입금
- 투자와 관련된 차관의 상환금
- 투자가 이루어진 계약국 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타방 계약국 당사자 국민의 소득
- 초기 자본 및 투자의 증진에 필요한 추가 금액

따라서 카자흐스탄 내 투자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배당금, 차관, 금융리스에 따른 분할 상환금, 청산의 경우 장비 매각에 대한 수익 등은 투자협약에 따라서 공정하고 무차별하게 자유로이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7. 검토사항

현재 카자흐스탄의 투자법은 내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혜택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여전히 고려해야할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1) 투자법상의 투자 안정성 보장에 대한 내용을 보면, 투자자와 관할기관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은 보건, 환경보호, 국가안보와 관련된 법률의 개정 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계약을 변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정치 및 경제 환경변화에 따라 카자흐스탄 국내법의 변경으로 외국인 투자자와 맺은 계약을 카자흐스탄 정부의 의지대로 변경

시킬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의 계약보호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종전의 외국인 투자법은 법률 및 국제협약이 개정된 경우에도 발표 후 10년간 또는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의 경우에는 동계약의 유효기간까지 투자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했었고, 환경보호, 보건, 윤리 등 관련 국내법 개정시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되 이로 인한 손실을 즉각적이고 충분히 보상되도록 규정하였다.

(2) 투자법은, 특정지역 또는 특정 부문에 대한 투자는 카자흐스탄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뚜렷하게 특정지역 및 특정부문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카자흐스탄 정부의 판단에 따라 투자가 제한될 수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진출이 카자흐스탄 정부와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된다.

(3) 새로운 투자법이 기존법과 상충되는 경우, 기본법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해,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본법 조항들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4) 투자법에는 투자분쟁 발생시, 관계자간 협상, 카자흐스탄 법, 그리고 국제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투자법이 정한 투자분쟁을 투자자와 투자정부 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여, 투자자간 분쟁 발생시 카자흐스탄 국내법이 적용되어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리할 소지가 있다.

(5) 투자법에는 투자자의 자산을 국유화할 수 있고, 국유화 될 경우 투자자의 자산은 시장가치로 보상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시장가치는 카자흐스탄 법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산정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있다.

제 3 절 세 법

I. 개 념

카자흐스탄의 세법은 CIS 국가 중에서는 가장 잘 정비되어 있고, 간결하다. 그러나 여전히 세법의 실제적용 및 집행관련 세부규정이 아직 미비하며, 일부 불투명하고 일관성이 없는 규정들이 있으며, 특히 세무경찰의 자의적 단속으로 투자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가운데 카자흐스탄 정부의 기본정책 기조는 지속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세, 소득세, 사회보장세 등의 기본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서는 2008년 12월에 통과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세법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2009년 개정세법은 i) 천연자원과 관계없는 경제부문에 대한 일반적인 조세부담 감소; ii) 천연자원추출에서의 경제적 수익 증대; iii) 조세특혜의 최대한 활용; iv) 조세행정시스템 향상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II. 발전과정

카자흐스탄은 1991년 구 소비에트연방국가로부터 분리독립한 후, 기업, 조합, 기구에 대한 조세명령(1991 Decree “On Taxes from Enterprises, Associations and Organizations”)을 공포하여, 독립국가로서의 첫 번째 조세법률을 채택하였다.

1995년에 세금 및 기타 의무적 납부의무에 관한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 “On Taxes and Other Obligatory Payments to the Budget”)을 공포하여, 카자흐스탄내 조세제도를 구축하였다. 이 대통령령은 단지 조세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만을 규정하고 있었고, 각 세금에 대한 구체

적인 정보는 몇 가지 지침사항들에 일임하였다. 2002년에 조세 및 기타 의무적 납부의무에 대한 카자흐스탄법률(The Cod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Taxes and Other Obligatory Payments to the Budget (the “2002 Tax Code”))이 시행되었다. 이 2002년 세법은 1995년에 공포된 종전의 대통령령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법률이었다. 사실상, 2002년 세법은 국가와 납세자간의 관계를 규율하였고, 세금의 계산 및 납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였다.

2008년에는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낮은 세율 및 구체적인 조세행정 절차를 규정한 세법을 새로이 개정할 것을 발표하였다. 그 결과, 지금의 세법이 2008년 12월 10일에 채택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티므로 술라이메노프 경제 부총리는 2009년 9월 23일 정부 정례브리핑을 통하여 지난 2008년 12월 개정된 세법의 적용을 당분간 유보할 것이라고 공표하였다. 2008년 12월 개정된 카자흐스탄 세법에 의하면, 천연가스 및 원유의 채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광물 채굴세를 2010년, 2011년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전세계적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카자흐스탄 경제도 침체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여 광물채굴세를 적어도 2010년까지는 인상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2009년 현재 20% 단일세율로 부과되고 있는 법인세도 2010년까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2008년 개정 세법에는 법인세를 2010년에는 17.5%, 2011년에는 15%까지 감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Ⅲ. 주요 세율

카자흐스탄의 2009년 1월 1일에 시행된 개정세법에 따른 현행 주요 세율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2009 개정세법에 따른 카자흐스탄의 주요 세율⁸¹⁾

세 목	세 율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	20% (등록된 고정사업장을 설립해 카자흐스탄에서 영업 중인 거주법인 및 비거주법인 모두에게 해당)
사회세 (Social tax)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 는 봉급과 현물증여의 11%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12% (카자흐스탄 내에서의 매출 및 카자흐스탄에 상품과 서비 스의 수입에 적용된다. 부가가치 납세자로서 등록을 위한 매출한도는 38,190,000 KZT 또는 약 195,000 EUR이다. 상 품의 수출은 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지점수익세 (Branch profit tax)	카자흐스탄에서 영업하는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대 한 법인세를 이후 순수이익의 15%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거주자들에게는 10%, 비거주자들에게는 15%
소비세 (Excise tax)	알코올(최대 리터당 3 유로), 주류 (최대 리터당 2.5 유 로), 담배(최대 개당 0.5유로), 가솔린(최대 톤당 25유로), 원유(톤당 0유로), 가스응축액(톤당 0유로), 카자흐스탄에 서 생산되거나 카자흐스탄에 수입된 3 리터이상의 엔진볼 륨을 가진 자동차(엔진볼륨의 큐빅센티미터당 0.5 유로)
재산세 (Property tax)	재산세는 오직 건물에만 적용되며, 법인에게 15%의 세 율이 적용
자원개발세 (Subsurface use taxation)	자원개발세에는 서명보너스, 상업적 발견에 따른 보너 스, 역사적 원가 보전지급, 광물생산세, 초과이익세가 포 함됨
토지세(Land tax)	품질, 위치, 용수공급 가능 여부에 따라 다름
자동차세(Vehicle tax)	엔진볼륨, 자동차 무게, 좌석 수에 따라 부과됨

81) http://en.wikipedia.org/wiki/Taxation_in_Kazakhstan

카자흐스탄은 우리나라와 1997년에 이중 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카자흐스탄에 합작 투자를 원하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는다. 총 합작자본의 30%이상을 투자하는 업체는 5년간 세금면제, 이익을 낸 후 추가 5년간 세금의 50% 감면을 받고 있다.

IV. 주요 내용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세법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법인세

(1) 법인세 세율

2009년 개정세법에 따른 법인세는 이전의 법률과 비교하여 몇 가지 변화가 있다. 법인세는 거주법인(정부기관은 제외)과 “고정사업장”(지점, 대표소,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에서 영업을 하거나 그 밖의 카자흐스탄을 수입원으로 하여 이익을 얻는 비거주법인에게 부과된다.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수익으로서, 2009년 개정법에는 법인세에 대한 점진적인 감세가 규정되었다.⁸²⁾ 즉, 종전의 30%에서 2009년 현재는 20%, 2010년에는 17.5%, 2011년에는 15%로 줄어들게 되어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0까지는 당분간 현재의 20%가 유지될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고정사업장 없이 영업을 하는 비거주자의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비율은 종전의 20%에서 15%로 감소되었다.

2009년 개정세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선수금 제도를 폐지하였고, 세금 목적상 기업이 적자가 생길 경우 이를 차기 이후의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tax loss carryforward)을 종전의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이를 이월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시켰다.

⁸²⁾ Article 147 (1) of the Tax Code

(2) 손실의 이연

법인세와 관련하여 사업손실,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사용된 1급 고정 자산 처분손실은 10년간 이연(기존 3년)되어 이후 과세기간의 과세소득과 상계될 수 있다.⁸³⁾

(3) 법인세 선납제도의 완화⁸⁴⁾

기존 법인세 선납제도는 다음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선납하지 않아도 된다.

- ① 지난 세무기간(1년) 동안 총 소득이 325,000 MPⅡ가 넘지 않을 경우 즉, 2008년 총 연간 소득이 325,000 MPⅡ⁸⁵⁾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2009년 1월, 2월, 3월에 법인세 선납신고 및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된다.
- ② 회계 기간 동안이나 회계 기간 이후에 법무국에 등록 되는 신규 법인
- ③ 회계 기간 동안이나 회계 기간이후 지점 및 대표 사무소를 제외한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고정 사업장으로 간주 되는 세무기관에 등록된 신규 비 거주법인

2.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율⁸⁶⁾

부가가치세가 2009년 개정세법에서 종전의 13%에서 12%로 감세되었다. 부가가치세납부자에는 거주법인(정부기관은 제외), 개인사업자,

83) Article 137 (1) of the Tax Code

84) Article 141 (2) of the Tax Code

85) MPⅡ는 월계산지수로, 2009년도에 적용되는 1 MPⅡ는 1,273텐게이다. 따라서 325,000 MPⅡ는 413,725,000 텐게(325,000 × 1,273 텐게)이다.

86) Article 268 (1) of the Tax Code

카자흐스탄에 고정사업장을 두어 영업을 하는 비거주자,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개인 및 법인이 이에 해당한다.

(2)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서는 분기별 신고로 확정되었다. 또한 부가세납세등록자는 신고 대상 분기로부터 두 달 후 15일까지 반드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⁸⁷⁾

(3) 납부기간

부가세납부등록자는 납부 대상 분기로부터 두 달 후 25일까지 반드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4) 최소판매거래 상향조정

기본 세법에는 부가세 등록요건으로 최소 판매거래가 15,000MPⅡ가 넘을 경우 부가세 등록을 해야 하나 세법 개정으로 최소 판매거래를 30,000 MPⅡ로 상향조정하였다.

3. 사회세

(1) 확정된 사회보장세율⁸⁸⁾

누진세율 적용이었던 사회보장세 납부가 2009년부터는 11% 세율로 고정되었다. 보통 외국인의 경우 높은 급여로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다소 혜택을 받았으나 금번 11% 고정세율로 인하여 기존에 비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 지급기일

사회세는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익월 25일까지 지급되어야 한다.

87) Article 269 of the Tax Code, Article 270 (1) of the Tax Code

88) Article 358 (1) of the Tax Code

(3) 신고서 제출기한

개인소득세 및 사회세 신고서는 납세자가 매 분기마다 제출해야 하며 제출 대상 분기로부터 익익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4. 토지세

2009년 세법 개정 내용에 따라 당해 년도 토지세 납부금 명세서는 당해 과세기간의 2월 20일이 아닌 15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⁸⁹⁾

5. 재산세

(1) 재산세 과세물건 규정변경

기존의 세법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물건은 고정자산(주택자원으로 분류된 물건 포함)과 무형자산이다”라고 되어 있으나 현 세법에서는 “조세대상 과세물건이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있는 빌딩, 축조물, 주택, 건물 및 기타 토지와 관련된 건물 부동산으로의 기본적인 수단이나 무형자산 투자”로 규정하고 있다.⁹⁰⁾

(2) 재산세율 인상

평균 연간 가치의 1% 세율로 적용되었던 재산세가 새로운 개정 내용에 따라 법인의 과세물건 평균 연간 가치의 1.5% 세율로 재산세를 적용해야 한다.⁹¹⁾

6. 자원개발세

2009년 개정세법에 따라 지하자원개발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는 아래와 같이 총 5가지가 있다.⁹²⁾

89) Article 393 (2) of the Tax Code

90) Article 396 (1) of the Tax Code

91) Article 398 (1) of the Tax Code

(1) 광물자원추출세(Mineral Extraction Tax, MET)

2009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광물자원추출세(Mineral Extraction Tax)는 추출된 광물자원에 대해 자원개발자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러한 광물자원추출세의 현금으로의 지급을 현물지급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해당 자원개발자간에 반드시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광물자원추출세의 세율은 3%에서부터 24%까지 추출된 광물 종류에 따라 다르다.

(2) 서명보너스(Subscription Bonus)

정부와 자원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실시권을 취득했을 때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다.

(3) 상업적 발견에 대한 보너스(commercial discovery bonus)

개발업자는 세법에 규정된 절차, 기간 및 금액에 따라 계약지역에서 일차적으로 채광된 산물을 증가시키기 위해 행하는 추가 탐사시 유용 광물의 발견을 포함하여 계약지역에서 새로운 광체가 발견될 때마다 상업발견에 대한 보너스를 지불한다.

(4) 역사적 원가 보전지급(Historic Costs)

지하자원개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계약분야의 탐사 및 개발을 위해 정부가 지출한 총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자원개발자가 지급하는 고정금액을 의미한다.

(5) 초과이익세(Excess Profit Tax, EPT)

영역이익의 몇 %를 초과하여 생산할 경우 지급하는 조세이다.

92) 종전에는 서명보너스, 상업적 발견에 대한 보너스, 로열티, 초과이익세로, 총 4가지였다.

특히 2009년 개정세법상 지하자원개발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관련한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 로열티(royalty)⁹³⁾는 광물자원추출세(MET)로 대체
- 지하자원개발계약의 한 유형인, 생산분배협약(Production Sharing Agreement, PSA)이 폐지. 그러나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한 생산분배협약(PSA)은 그 효력을 유지.
- 초과이득세(Excess Profit Tax, EPT)는 연간총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비율에 근거하여 세법에서 산정한 신축세율(the sliding scale at the rate)을 이용하여 산정. 비과세 순이익의 규모는 20% ~ 25%로 증가.
- 2009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모든 지하자원개발계약상의 조세안정조항(tax stability provisions)(기존의 지하자원개발계약 및 PSA는 제외)의 효력은 종료.
- 역사적 원가(Historical Costs)가 2009년 개정세법에서 조세항목으로 새로이 편입.

제 4 절 그 밖의 투자관련정책

I. 수출입거래가격에 대한 통제

1. 의 의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1년에 세무 및 관세당국에게 수출 및 수입 거래를 감독할 수 있게 하는 이전가격법(Law of the RK on State Control at the Application of Transfer Prices)을 채택하여, 국제거래 및 국제거래와 관련 있는 계약에서 수출가격의 조작을 통해 국가수입이

93) 2009년 개정이전에는, 개발업자는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승인한 비율로 유용광물에 따라 세법이 정한 절차 및 기간에 따라 로열티를 지불해야 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수적 산물 및 지하수를 포함한 유용광물채굴시에는 개발업자는 법률이 정한 중량 및 조건에 따라 각 종류별로 별도의 로열티를 산정한다.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입가격(이전가격) 결정시 발생하는 사회관계를 규율한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단순한 세무조사와 구별되는 국제기업거래에 대한 별도의 통제 유형에 속한다.

이전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실이 발견되면(예를 들어, 저평가된 가격으로 판매(수출)되고, 고평가된 가격으로 구매(수입)된 경우), 세무당국은 세금과 대금을 부과시켜 수익을 조정한다.

2. 통제대상거래

① 모든 국제거래

② 국제거래와 직접적인 상호관계를 가지면서 카자흐스탄에서 수행되는 거래로서, (i) 거래 당사자중 일방이 세제특혜를 받고 있거나, (ii) 거래 당사자중 일방이 거래 수행 전 2년간 세무신고에서 영업이익이 없다고 신고한 경우, 그 당사자 일방인 지하자원개발권자가 채굴한 자원의 판매

3. 거래가격에 대한 감독

거래의 감독은 이하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납세자의 매매가격과 시장가격(market price)을 비교하여 이루어진다.

① 납세자의 가격은 다음에 근거하여 산정된다:

- 관세당국이 세무당국에 제출한 화물세관신고서(Cargo customs declarations);
- 납세자가 세무당국에 제출한 공화국 및 지역의 전자 모니터링 자료

② 시장가격은 다음에 근거하여 산정된다:

- 정보기관들(Informational agencies);

- 카자흐스탄의 국가기관들(인접국가 및 먼 해외국가의 기관들도 포함);
-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sations); 그리고
- 납세자들 자료.

납세자의 거래를 감독한 결과 이전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실이 발견 되면, 세무당국이 이전가격문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러한 조사는 세금 및 관세 의무의 이행여부에 관한 조사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4. 문제점 및 독립기업원칙의 채택

외국투자자들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자국의 이전가격법을 근거로 OECD가 정한 적절한 시장가격 산정기준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전가격이 시장가격과 특정비율(최근까지 10%가 적용됨)의 편차가 있는 거래에도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관련 없는 거래 당사자들간의 거래에까지 이전가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국제 방법론과는 다른 카자흐스탄의 편차 값은 외국기업들이 자국에서의 이중과세회피에 관한 조약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2008년 7월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전가격법을 개정하여 OECD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이전가격 세제의 지배적 규범으로 자리 잡은 “독립기업의 원칙(arm's length principle)⁹⁴⁾”을 채택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외국투자자들은 이 법이 국제기준에 보다 가깝다는 데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법이 관계 당사자들간의 거래에 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거래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는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94)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nciple)은 외국기업의 국내지점 또는 자회사(마찬가지로 내국기업의 국외지점 또는 자회사)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점과 지점 또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완전히 독립된 기업으로 전제하여야 한다는 소득금액 계산상의 기본원리이다.

II.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규제

1. 노동허가 쿼터제

외국인 노동자가 카자흐스탄에서 합법적으로 근로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노동허가를 취득하는 것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국인들에게 노동허가서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고용률을 높이고자 한다. 노동허가 쿼터제(work permit quota system)는 1998년 고용인구법(Law on Employment of the Population)에 근거하고 있고, 본 법상의 노동허가 쿼터제에 따라서 정부는 전문분야 및 지리적 지역에 근거하여 외국인들이 이용가능한 노동허가수를 제한한다.

2007년 12월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채택하여, 노동사회보장부(Ministry of Labor and Social Protection)가 외국인들에게 노동허가서의 발급을 간소화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국내 노동시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자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추가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는 오직 적합한 유효노동력이 국내에서 찾을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발급되며, 이는 카자흐스탄 노동당국의 검증과 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2. 허가절차

외국노동자로서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사용자들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조건들을 이행하게 된다:

- 외국인 적임자들과 동일한 능력을 갖추도록 카자흐스탄 시민들을 훈련
- 외국인 노동자들을 카자흐스탄 시민들로 점차적으로 모두 교체

- 생산량이 증가할 경우 카자흐스탄 노동자들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카자흐스탄 노동당국은 20일 이내에 외국인들을 위한 노동허가신청서의 검토를 마쳐야 한다. 이러한 허가가 내려지면, 사용자들은 관계당국에 10일 이내에 그들의 노동허가 만료 후에 외국인의 즉각적인 본국출발을 보장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이 노동허가 쿼터는 0.14%에서 1.6%로 점차 증가하였다. 그러나 현재 경제위기로 인해, 정부는 외국노동자 노동허가 쿼터를 절반으로 줄여 2009년에 겨우 유효노동력의 0.75%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II. 외환정책

1. 의 의

카자흐스탄의 외국환관리 관련규정은 그렇게 엄격하지 않은 편이다. 1996년에, 카자흐스탄은 IMF 협정문(Articles of Agreement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제8조를 채택하여, 경상거래시 환전과 투자수익의 송금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임금지급 등 현금지출시 외화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1999년에 카자흐스탄 정부와 중앙은행은 환율자유화조치를 발표하여 변동환율제⁹⁵⁾를 단행하였다.

2. 주요 외환규제내용

- 은행계좌 개설에 대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차별은 없다.

95) 각국의 통화가치를 고정시키지 않고 외환시장의 수급상태에 따라 자유로이 변동되도록 하는 제도

- 비거주자의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국내 또는 국외로의 송금은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중앙은행은 비거주자가 외국통화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한다. 외국투자자는 카자흐스탄내에서 벌어들인 텡게(Tenge) 수익을 환전하여 송금할 수 있다.

3. 외환관리법상의 송금제한

2005년 외환관리법(Law on Currency Regulation and Currency Control)상의 송금제한은 다음과 같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자금출처에 관한 자료제출 없이 현금 최대 1만불(\$10,000)까지 해외로 가지고 나갈 수 있다.
- 3천불(\$3,000)이 넘는 현금송금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 1만불(\$10,000)이 넘는 송금은 중앙은행이 발급한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2007년 1월 1일부터 외국환거래에 필요한 모든 허가요건 및 절차들은 폐지되었고, 단순히 중앙은행에 등록 또는 신고제로 변경되었다.

2008년에 중앙은행은 외환관리법 개정안을 발표하여 수출 또는 수입거래증을 요구하는 거래한도를 \$10,000에서 \$50,000로 상향조정하는 등 통화규제 보다 완화하였다.

IV. 외국인 토지소유에 대한 규제

외국 민간법인과 카자흐스탄 국내민간법인은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고 모든 형태의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 민간법인은 자유로이 영업이익을 매매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헌법에 의하면, 토지 및 기타 천연자원은 법률이 정한 조건에 따라서 카자흐스탄 국민에 의해 소유 또는 임대될 수 있다.

2003년 토지법(Land Code)은 카자흐스탄 국민이 농지 및 상업적/비상업적 건물 등이 있는 도시적 토지(urban land), 주거지 등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오직 카자흐스탄 국민들과 카자흐스탄 법인만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지법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는 허용하지 않는다:

- 국가방위 및 국가안전을 목적으로 하여 이용되는 토지
- 특별히 보호되는 자연지역, 휴양지, 역사적/문화적으로 중요한 지역
- 숲, 수분저장소(호수, 강, 수로 등), 빙하, 늪 등
- 공용구역
- 주요 철로 및 공용도로

단기 토지임대는 최대 5년동안 가능하다. 장기토지임대는 최대 49년이다. 외국인들은 최대 10년까지 농경지를 임대할 수 있다. 외국인들은 또한 카자흐스탄에 등록된 합작투자회사(Kazakhstani-registered joint venture) 또는 완전 자회사를 통해 농지(agricultural land)를 소유할 수도 있다.

V.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제

1. 의 의

카자흐스탄은 1992-1993년부터 지적재산권 등록 및 보호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에는 발명, 산업용 디자인, 설비모델, 상표, 서비스 마크, 원산지명 등을 포함하는 모든 산업재산에 관한 권리와 저작권 및 관련 권리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적재산권 등록 및 보호에 관한 기초적인 권한은 카자흐스탄 법무부 산하 지적재산권위원회(IPRC)가 관할한다.

카자흐스탄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위원회의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선 등록자 우대 원칙에 따라 IPRC에 가능한 빨리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2005년에 카자흐스탄은 형법 및 민법을 개정하여 지적재산권 범죄를 보다 용이하게 기소할 수 있고 그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시켰다.

2. 주요내용

(1) 발명품, 실용품 신안모델, 산업디자인 등록

발명품은 새롭고 발명품의 정도가 진전된 것이면서 산업에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다. 발명품의 특허 보호기간은 20년간 유효하며, 특허신청은 IPRC로 하면 된다. 실용품 신안모델은 새롭고 산업에 적용이 가능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실용품 신안모델에 대한 특허 유효기간은 5년이며, 3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실용품 신안모델도 IPRC에서 관할하고 있다. 산업디자인은 새롭고 독특하고 산업에 적용이 가능할 경우 보호받게 된다. 산업디자인 특허 유효기간은 10년이며 5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특허권자는 자인인 또는 법인에게 권한 양도가 가능하다. 특허 양도계약 및 라이선스계약은 IPRC에 등록해야 한다.

(2) 상표권, 서비스마크, 원산지 표기

상표권은 IPRC 등록을 기초로 하고 있다. 상표권은 유효기간이 10년이며 10년간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상표권 라이선스계약 및 양도계약은 IPRC에 등록해야 한다. 원산지 표기에 대한 법적 보호도 IPRC에 등록되어야 가능하며 원산지 증명서 소유자가 해당 제품의 원산지 표기 사용권한을 부여할 권한은 없다.

(3) 저작권,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및 관련권한에 관한 법령은 과학(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 포함), 문학, 예술, 연극, 영화, 방송 분야에서는 저작권법에 의거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저작권 보호는 등록요건과 관계없이 저자에게 부여되고 저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40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4) 불공정 경쟁 방지

불공정 경쟁 방지 법령은 민법, 행정법, 형사법 등과 연관되어 소비자 권한 보호를 위한 불공정 경쟁 방지를 범위가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3. 관련 법률

- 저작권 및 관련법: 1996년 제정. WTO TRIPS 협정 및 베른협약 내용을 대부분 수용.
- 상표권, 서비스마크, 원산지 표기 관련법: 1999.7.26
- 특허법: 1999.7.16
- 산업재산권협약 국제선언: 1993. 2. 5

VI. 자본시장정책

1. 개 요

건전한 금융시스템과 안정적인 거시경제구조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구 소비에트 공화국들 가운데 카자흐스탄이 가장 높이 평가된다. 카자흐스탄은 국제규범과 조화되는 법률, 규제, 그리고 회계시스템으로의 개선이라는 공식적인 정책방침 하에, 금융재원의 흐름을 조정하여 국가의 가장 유망한 경제부문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나아갔다.

2. 금융동향

2006년에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제2은행권의 지급준비율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준금리(refinancing rate)를 두 차례 올렸다. 2001년에서 2007사이의 자금유입과 상품수출로 인해, 중앙은행은 외환보유고를 축적할 수 있었고 동시에 이자율을 내리고 한자리수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할 수 있었다.

2008년, 기준금리는 11%에서 10%로 감소했고, 제2은행권 지급준비율은 완화되었다. 2008년 12월 31일자로, 중앙은행의 금과 경화(hard currency)의 순보유고는 194억 달러(2007년 12월에는 181억 달러)에 이르고, 중앙은행과 National Oil Fund의 보유고를 모두 합한 카자흐스탄의 금과 경화의 총보유고는 467억달러(2007년 12월에는 390억 달러)에 이르러, 2008년 동안 21%의 성장을 이루었다.

중앙은행은 시장본위의 정책을 추진하여 금융부문의 성장과 환율안정에 노력하였다. 1999년에 중앙은행은 개인들이 가정에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약 10억 달러를 은행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예금보험제도(Deposit Insurance System)를 만들어, 이때부터 민간예금이 39배가 늘어, 1999년 11월에 3억 달러에 못 미치던 민간예금이 2008년 11월에 122억 7천 달러에 이르렀다.

글로벌 위기동안 은행권을 지원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예금보험에 대한 최대한도를 700,000 텐게(약 6천 달러)에서 5백만 텐게(약 4만2천 달러)로 7배가량 확대하였다.

3. 은행시스템

카자흐스탄의 주식시장(Kazakhstan Stock Exchange)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아직은 현실적인 자금조달수단은 아니다. 1998년부터 카자흐스탄 은행들은 국제금융시장에 유러채(Eurobonds)를 매각해 신디케이

티드 론 (Syndicated Loan)을 통해 자금을 모았고, 그 수익으로 국내 대출시장을 지원하는데 사용되었다. 카자흐스탄의 주요 은행들은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비교적 좋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원(Financial Supervision Agency, FSA)은 은행시스템을 감독한다.

2007년 여름의 글로벌 유동성 위기는 지난 5년간 대부분 해외차관에 의존해왔던 카자흐스탄 금융시스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카자흐스탄 은행은 막대한 양의 차관을 국내 건설 및 부동산 부문, 특히 아스타나(Astana)와 알마티(Almaty)에 신규 주거시설을 위한 개발대출이나 주택담보에 사용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유동성 위기는 카자흐스탄의 주요 은행들이 자신들의 공격적인 해외차관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하여, 국내 여신활동을 줄이지 않을 수 없게 했다. 이에 카자흐스탄 중앙은행과 정부는 2007년 말에 은행권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쿨링건설부문(cooling construction sector)에 자본을 투입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상품가격하락과 실업률 증가를 가져온 지속적인 글로벌 금융위기는 카자흐스탄의 주요은행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2008년 10월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카자흐스탄의 상위 4개 주요 민간은행들의 소유지분 25%를 인수하는 등의 안정화계획(stabilization plan)을 발표하여, 은행권에 40억 달러를 투입하였다.

4. 주식시장

카자흐스탄 증권거래소(Kazakhstani Stock Exchange, KSE)는 1997년에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2008년에 카자흐스탄 증권거래소와 알마티 지역금융센터(Almaty Regional Financial Center, AFC)가 합쳐져 새로운 상장규칙이 도입되었다. 2008년 12월에, KSE와 AFC는 101개의 등록회원들 두었다.

불충분한 회계관행이 여타 많은 회사들이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에 장애를 주고 있다. 더군다나 회사경영자들은 더 많은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자신들의 기업에 대한 지배권이 희석되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2008년 10월 1일까지, KSE의 전체 자본투여도는 588억 7천만 달러이며 이는 GDP의 46.8%에 해당한다. 이는 2007년 10월에 719억 5천만 달러, GDP의 70.7%였던 것에 비해 감소하였다.

카자흐스탄 증권거래소에서의 거래는 대량매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유동성은 낮으며, 분산정도는 매우 넓다. 2006년에, 몇몇 상위 기업들이 런던주식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 LSE)에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s)를 하였다. 카자흐스탄 기업이 해외에 주식을 상장할 경우 국내 상장도 병행될 것을 정한 2006년 법에 따라서 이들 기업들은 카자흐스탄 증권거래소에도 주식을 상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의 상장과 카자흐스탄 연기금의 KSE 거래주식에의 자본투자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소는 여전히 저조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카자흐스탄 기업들이 갖는 소유권 희석 및 기업자료 공개 등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카자흐스탄의 채권시장(debt market)이 보다 더 발전되어 있는 상태이다.

카자흐스탄의 주요 금융규제기관인 금융감독원(Financial Supervision Agency, FSA)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은행 및 보험 부문에 대해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5. 주식회사법

주식회사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면제대상이 아닌 한 25%이상의 주식을 상호보유 할 수 없고, 상호보유주식회사에 25%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카자흐스탄 법률에 따르면, 어느 한 회사가 다른회사 주식의 20%이상 보유할 경우 이들 회사를 “관계”회사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 주식보유회사는 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주식 가운데 25%이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주주총회에서 인수 및 합병 등 여러 가지 회사행위를 승인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국내 또는 외국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카자흐스탄에는 적대적 기업매수가 거의 없다. 이는 주로 대공개회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방어책이 특별히 외국투자자들을 표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현재 법률은 기업매수(takeovers)에 대한 법적인 틀을 규정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민법은 다른 회사주식의 20%를 매수한 회사는 그 주식매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호투자펀드산업(mutual investment fund industry)은 그 규모에 있어서는 아직 미비하나 점차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2008년 10월 1일까지, 상호투자펀드의 총 자산은 23억 8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고, 2007년 10월과 비교해 볼 때 105%가 증가하였다.

1998년 주식회사법(Law on Joint Stock Companies)은 공개회사와 비공개회사를 규제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이 법률은 다음과 같은 남용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 신주발행
- 납입자본금(charter capital)의 유지 및 배당지급에 대한 제한
- 회사의 자기주식취득
- 부채지분전환(debt-to-equity conversions)
- 회사임원에 대한 신인의무
- 의결권의 대리행사(proxy votes)
- 독립 감사
- 회사의 자산 매각시 자산가치의 결정

주식회사법은 또한 공개주식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를 통해 대상회사 주식의 30%이상 매수하고자 할 경우, 매수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과 해당 대상회사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서 이를 규제한다. 또한 상기 매수이후에, 모든 잔여 주주들에게 매수 직전 6개월동안의 평균주식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것을 제의할 것을 요구한다.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정관채택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법률이나 규정은 없다. 주식회사법은 그러나 1인 주주가 가질 수 있는 주식이나 의결권의수에 대해 제한하는 정관채택은 허용한다.

2007년 3월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소수주주의 이익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이 법의 제정은 소수주주의 이익에 대한 막대한 침해와 주식시장의 발전을 촉진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로 인해 추진되었다.

제 5 절 소 결

카자흐스탄의 에너지개발 관련 법규와 정책들은 에너지 및 광물자원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자를 적극유치하기 위한 투자환경을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투자법상의 투자특혜, 세법상 각종 세율인하, 주식회사법상 소수주주보호규정 등은 그 노력의 일환으로 단행된 조치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유치를 위한 법규 및 정책변화들에도 불구하고 투자환경변화에 따라 투자안정성을 흔드는 규정들이 도입되면서 투자자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즉 카자흐스탄은 자국 에너지개발사업에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혜택을 주는 선진국 의존형의 개발전략에서 자국의 광물 및 에너지 자원에 대한 항구적 주권을 확립하고 자원의 자주적이고도 유효한 이용을 통하여 자국이익 극대화과 국제 시장에서 입지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의 에너지자원개발산업이 아직 외국투자자의 자본력과 기술력이 필요한 수준이지만, 고유가가 지속되는 동안 산유국들의 자원민족주의도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서 카자흐스탄 에너지개발사업에 국내기업이 진출시에 카자흐스탄 정부의 정책 및 법제도 현황을 고려하여 투자안전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제 5 장 결 론

카자흐스탄은 석탄, 원유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으로서 에너지뿐만 아니라 광물자원 투자처로서의 세계적인 관심대상이다. 카자흐스탄 정부 역시 경제발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에너지자원산업을 장려하여 이 산업의 생산물 수출을 통해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이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하여 왔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의 현행 법규의 세부사항은 불투명하고, 잦은 개정으로 투자자의 지위가 불안한 상황이며,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임의해석 또는 관행이 앞서는 경우가 많아 에너지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한 프로젝트 입찰이나 체결한 계약의 이행 등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지하자원개발법이 카자흐스탄 정부에 계약의 변경 또는 종결권을 모호한 근거로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정부의 우선취득권의 행사범위를 확대시키는 등 광물 및 에너지 자원에 대한 항구적 주권을 확립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카자흐스탄에 지하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외국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에너지개발사업에 국내기업이 진출시에 카자흐스탄 정부의 정책 및 법제도 현황을 고려하여 투자안전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 투자자의 투자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 보다 높은 순위로 카자흐스탄의 기업환경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카자흐스탄의 투자환경은 아직 과도기에 있으며, 향후 국제 기준에 맞는 법규정과 글로벌 수요에 의한 산업개방이라는 경제논리에 의해 점차 개선될 것이다. 또한 최근 카자흐스탄은 WTO 가입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진입하고 있어 투자와 관련

제 5 장 결 론

된 법규정비 및 외국인 투자 규제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해외자원협력 및 기술정보 구축 연구보고서 (2006)
- 이현복, 카자흐스탄 지하자원개발 관련법에 관한 고찰, 한국시베리아 연구 제11집 (2007)
- 이동길, 카자흐스탄의 광물자원 부존 현황 및 개발여건,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지 Vol.46, No.5 (2009)
- 한국수출입은행, 카자흐스탄 자원현황과 투자환경 (2009)
- Alla A. Dzhanaleyeva, Regulation of Investment Relations in the Oil and Gas Sector, I. Bantekas, J. Paterson and M. Suleimenov (eds); Oil and Gas Law in Kazakhstan: N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2003 Kluwer Law International. Printed in Great Britain
- Olga Chentsova, Kazakh Legislation on Subsurface Use, I. Bantekas, J. Paterson and M. Suleimenov (eds); Oil and Gas Law in Kazakhstan: N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2003 Kluwer Law International. Printed in Great Britain
- Illias Bantekas, The 2003 Investment Law-Its Impact and Compatibility with International Foreign Investment Law, I. Banatekas, J. Patertson and M. Suleimenov (eds.); Oil and Gas Law in Kazakhstan: N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2003 Kluwer Law International)
- T. Walde and G. Ndi, Stabilising International Investment Commitments: International Law versus Contract Interpretation, 31 Texas Int'l L.J. (1996)

참 고 문 헌

Ian R.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6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Saule Akhmetova, Review of the new law on subsoil and subsoil use (2009. 2), available at <http://www.gratanet.com/en/publications/264>

Kenneth E. Mack, Protection of the Oil and Gas Investor's Rights in Kazakhstan, *International Energy Law & Taxation Review* (2006. 3), available at http://www.inogate.org/energy_themes/kazakhstan/

Arystanov Eldar, The investment tax preferences under the New Tax Cod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2008. 12), available at <http://www.gratanet.com/en/publications/256>

Arystanov Eldar, Investment preferences: from A to Z (2008. 8), available at <http://www.gratanet.com/en/publications/226>

Mendybayev Arman, New legislation on transfer pricing. Its downsides and advantages in comparison with the current legislation (2008, 8), available at <http://www.gratanet.com/en/publications/227>

U.S. Department of State, 2008 Investment Climate Statement-Kazakhstan (2009. 2) available at <http://www.state.gov/e/eeb/rls/othr/ics/2009/117413.htm>

Michael P. Barry,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entral Asian Energy: A CGE Model, *Eurasian Journal of Business and Economics* (2009.2), available at <http://www.ejbe.org/EJBE2009Vol02No03p35BARRY.pdf>

http://en.wikipedia.org/wiki/Taxation_in_Kazakhstan